

발간등록번호

11-B553457-000002-10



공공저작물 상담 및 활용 사례집

부록 저작권 양도 계약서 양식 등

KCISA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정보원



9 791196 666450 3
ISBN 979-11-966645-0-3

공공저작물 상담 및 활용 사례집

개정판

ver.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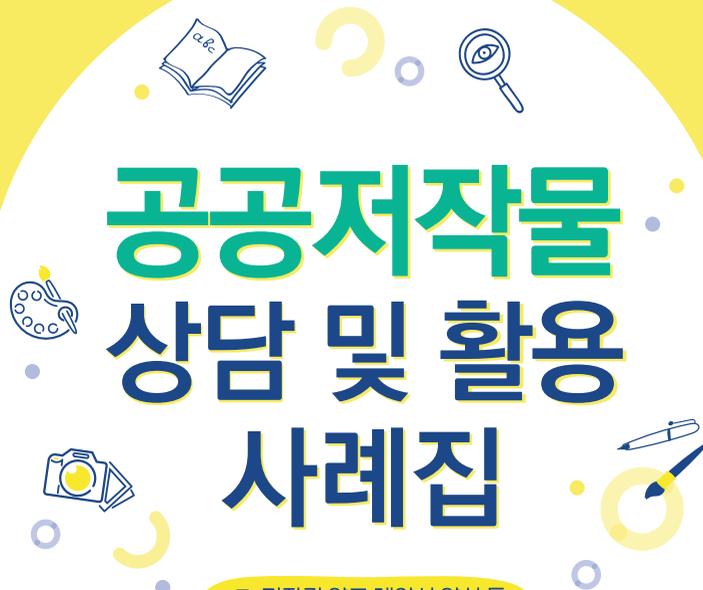
KCISA 한국문화정보원

공공저작물 상담 및 활용 사례집

부록 저작권 양도 계약서 양식 등

KCISA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정보원





공공저작물 상담 및 활용 사례집

부록 저작권 양도 계약서 양식 등



공공저작물 상담 및 활용 사례집

2019년 12월 16일 인쇄
2020년 3월 6일 초판 발행

한국문화정보원 공공저작물 개방지원센터에서 펴냄
(주)태그엔에서 디자인을 진행했습니다.

편집자 주

본 사례집에 수록된 공공저작물 상담 사례의 법리 적용 및 결론 등은 세부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공저작물 개방지원센터 소개

공공저작물 개방지원센터는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 제16조*에 따라 2016년 3월 개소하였으며, 공공저작물의 체계적 관리 및 이용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관 맞춤형 개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관련근거 ::

제16조(공공저작물 개방지원센터 운영)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저작물의 체계적인 관리 및 개방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저작물개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공공저작물개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공저작물의 권리관계 확인지원
 2.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진단 및 개선 지원
 3. 공공저작물 개방 및 이용촉진을 위한 자문
 4. 공공저작물 관련 교육·연수
 5. 그밖에 공공저작물의 효율적인 제공 및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항

서비스 신청 상시 접수 / 저작권법 상담 무료 지원



CONTENTS

I 상담 사례

1. 공공저작물 담당자 상담 사례	007
1-1. 공공저작물 일반	008
1-2. 공공저작물 취득 및 관리	017
1-3. 공공저작물 제공	024
1-4. 공공저작물 이용	041
1-5. 공공누리 연계	048
1-6. 기타(서체프로그램, 초상권 등)	063
2. 국민(일반 이용자) 상담 사례	075
2-1. 공공저작물 일반(대상, 적용, 이용절차)	076
2-2. 공공저작물 이용조건(출처표시, 상업적 이용, 변형, 위반)	089

II 및

만화로 보는 공공누리 제도 - 「오, 공공누리」	117
----------------------------	-----

III 활용 사례

1. 우수 공공저작물 소개	135
2. 공공저작물 활용 방법	145
3. 공공저작물 활용 사례	163
• 부록 1 「오, 공공누리」 번외편	173
• 부록 2 창작물 공모전 가이드라인	183
• 부록 3 계약서 및 동의서 양식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서, 자유이용 허락 동의서, 초상 이용 동의서)	195



공공저작물 담당자 상담 사례

❶ 공공저작물 일반	1
❷ 공공저작물 취득 및 관리	1
❸ 공공저작물 제공	1
❹ 공공저작물 이용	1
❺ 공공누리 연계	1
❻ 기타 (서체프로그램, 초상권 등)	1

01

I. 상담사례



기관에서 업무에 의하여 다양한 위치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도 공공저작물에 해당되나요?

- ◆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의미합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 ◆ 따라서 데이터라고 하더라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이 표현된 창작성이 있는 것이라면 저작물에 해당할 것이나, 단순 수치 등 사상 또는 감정이 배제된 데이터라면 저작물성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 ◆ 다만 저작물성의 판단은 최종적으로 법관이 판단하는 것이고, 데이터라고 하더라도 여러 형태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저작물성을 판단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저작물성의 인정문제는 사안에 따라 달리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참조법령 및 판례 10p

02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완료 후에는 20~30페이지 정도의 보고서로 완성될 것 같은데,
이러한 설문조사도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되나요?

- ◆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므로 ‘설문지’ 등은 어문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문으로 표현되지 않은 설문 기법 등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이 아닙니다.

참조 법령

[저작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참조 판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한 창작성의 정도(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2도446 판결)

-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하여는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므로 그 요건으로서 창작성이 요구되나, 여기서 말하는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할 뿐이어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단지 저작물에 그 저작자 나름대로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고 다른 저작자의 기존의 작품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이면 충분하다.



0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작성한 것이라면 저작재산권을 일부 보유했는지, 전부 보유했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공공저작물인가요?

- ◆ 원칙적으로 국가 또는 지자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업무상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이 자유이용대상 저작물에 해당합니다.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및 제2항)**
- ◆ 다만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지침 제3조 제2호**는 공공저작물의 정의에 관하여 “공공저작물”이란 공공기관 등이 그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지고 있는 저작물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공공저작물의 정의에 관하여는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가지고 있는 저작물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 ◆ 이는 공공기관 등이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나머지 저작권자가 저작재산권을 양도하거나 공공누리 부착 및 이용허락에 동의한 경우를 예정한 것인 바,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나머지 저작권자가 저작재산권을 양도하거나 공공누리 부착 및 이용허락에 동의한 경우라면 자유이용대상 저작물이 될 수 있다고 해석됩니다.

*참조법령 13p

04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에 의거,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소유해야만 자유 이용이 가능한가요?

- ◆ 원칙적으로는 저작재산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자유이용대상 저작물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나머지 저작권자가 저작재산권을 양도하거나 공공누리 부착 및 이용허락에 동의한 경우라면 자유이용대상 저작물이 될 수 있습니다.
- ◆ 따라서 기관에서는 향후 저작권 양도 또는 공공누리 부착을 포함한 이용허락을 받은 경우라면 자유이용이 가능한 저작물로 개방하실 수 있고, 이용자는 공공누리 이용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 ◆ 사례집 부록에 첨부된 **저작재산권양도계약서*** 및 **자유이용허락동의서*** 등 관련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저작재산권양도계약서] 196p

*부록 [자유이용허락동의서] 200p

참조 법령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2.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4.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
- ② 국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4호의 공공저작물 중 자유로운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지침]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공공저작물”이란 공공기관 등이 그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지고 있는 저작물을 말한다.

05

시청 소속 공무원입니다.

조례나 고시, 공고 등은 저작물이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시에서 작성하는 보도자료나 입법예고 자료는 공공저작물에 해당이 되나요?

- ◆ 보도자료에 단순한 사실의 알림이 아닌 작성자의 생각이 표현되었다면 저작물로 볼 수 있으며, 시청 직원이 작성하였다면 공공누리 1유형에 해당합니다. 입법예고 게시판의 자료는 비보호저작물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며(저작권법 제7조) 공공누리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참조법령 15p

06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처분 문서에도 공공누리 적용이 가능한가요?

- ◆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있는 행정처분 문서는 특별히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로 보기 어렵고 창작성이 인정된다 하여도 보호되는 저작물이 아닙니다(저작권법 제7조). 또한 대부분의 처분문서에는 처분대상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공공누리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조법령

[저작권법]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07

저작물의 ‘공표’ 시점이 궁금합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하거나 간행을 할 경우 공표시점은 언제인가요?

- ◆ ‘공표’는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 따라서 홈페이지에 해당 게시물을 최초로 공개하는 것이라면 게시일이 공표 시점이 되고, 발행물의 경우 발행일을 공표 시점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참조 법령

[저작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5. “공표”는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I. 상담사례

공공저작물 담당자 상담 사례

② 공공저작물
취득 및 관리

08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지침' 제8조에 따르면
 저작권 취득년도별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하는데,
 저작권 취득년도는 저작물 창작이나 계약년도를 의미하는 건가요?

- ◆ 저작권 취득년도란 저작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한 경우 창작한 연도를 의미하고, 양도 계약 등으로 취득한 경우 계약 성립 시로 볼 수 있습니다.



**참조
법령**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지침]

제8조(저작권정보 구축 및 보존)

- ① 공공기관 등은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의 권리관계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데이터베이스(이하 '저작권정보'라 한다)의 형태로 저작권 취득년도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② 공공기관 등은 제1항의 저작권정보에 포함된 저작권의 보호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저작권 정보를 보존하여야 한다.

09

기관에서 촬영을 목적으로 채용한 직원이 업무상 촬영한 결과로 발생한 시청각물이 저작물에 해당되나요?

저작물이라면 소유권자와 저작권자는 누가 되나요?

만일 이 시청각물을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각종 전시회 등 행사에 활용할 경우 해당 직원의 동의가 별도로 필요한가요?

- ◆ 법원은 사진저작물이 보호되는 저작물이 되기 위해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8다44542) 다만 저작물성에 대한 최종적 판단은 법원이 하는 것이므로 기관에서는 실무상 저작물성이 있음을 전제로 자료를 관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 기관에 소속된 직원이 업무상 촬영한 사진은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업무상 저작물로 기관이 저작자가 됩니다. 즉 업무상 저작물의 성립 요건을 검토하여 모두 충족한다면 저작자는 기관이 됩니다.

업무상 저작물의 요건 (저작권법 제9조)

1. 기관이 저작물 작성을 기획
2. 기관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작성(또는 촬영)
3. 업무상 작성(또는 촬영)
4. 기관 명의로 공표
5.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을 것

- ◆ 위 요건에 따라 업무상 저작물로 인정되어 기관이 저작자가 되는 경우 기관은 별도의 동의 없이 사진 이용이 가능합니다.

참조 판례



사진저작물이 구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다44542 판결)

- 구 저작권법(2006.12.28.법률 제81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고 그 요건으로서 창작성이 요구되므로, 사진저작물의 경우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그러한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다.

참조 법령



[저작권법]

제9조(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법인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등이 된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경우 공표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10

저희 기관에서 원고를 작성하고 용역업체에 표지 디자인, 원고 편집, 일부 일러스트 디자인 제작물 등을 맡겼습니다.

이 경우 완성된 결과물과 관련하여 별도로 저작재산권 양도나 이용허락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 ◆ 저작권은 창작한 저작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며, 표지디자인, 일러스트 디자인의 저작물성이 인정된다면 용역업체에게 저작권이 귀속됩니다. 따라서 기관에서 용역물의 저작재산권을 취득하여 공공저작물로 개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인 용역업체로부터 저작재산권을 양도받거나, 이용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 경우 용역업체에서 일부 이미지 등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였을 경우 이미지의 저작권자가 공공기관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용역 계약 시 '수급업체는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며 문제가 생길 경우 이와 관련한 책임을 진다.'는 조항을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참조 법령

[저작권법]

제45조(저작재산권의 양도)

- ①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제46조(저작물의 이용허락)

- ①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11

기관에서 주최한 정책 제안 공모전 결과물을 이용할 때에도 저작권 양도를 받아야 하나요?

- ◆ 저작권법은 정책 제안과 같은 단순한 아이디어는 보호하지 않으므로, 제안된 정책 자체를 이용하기 위해 저작권 양도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 ◆ 다만 제안서에 표현된 어문 자체는 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으므로 서술된 내용을 그대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거나, 저작권 양도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참조 판례



아이디어가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는지 여부(대법원 2000.10.24.선고99다10813판결, 대법원 2009.5.28.선고 2007다354 판결 등 참조)

- 저작권의 보호 대상은 학문과 예술에 관하여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이고,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및 감정 그 자체는 설사 그것이 독창성, 신규성이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므로, 저작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한다.

12

I. 상담사례



공공누리 유형을 선택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 ◆ 저작권법 제24조의2 취지에 따라 기관 등이 저작권을 전부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공누리 제1유형을 부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해당 기관 외에 제3자의 저작권자가 있는 경우 해당 저작권자의 동의 범위에 따라 제1유형 내지 제4유형을 선택하여 부착하시면 됩니다. 물론 해당 저작권자가 공공누리 부착에 동의하지 않으면 공공누리를 부착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유형

제 1유형



제 2유형



제 3유형



제 4유형



13

온라인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과 공공누리를 적용하여 개방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 ◆ ‘공개’와 ‘개방’의 의미는 상이한 바, ‘공개’가 이용허락이 아닌 단순히 정보나 사실 등을 여러 사람에게 터놓는 것을 의미한다면, 공공누리를 적용하여 ‘개방’하는 것은 공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유로운 이용을 허락하는 광범위한 이용 허락을 의미합니다.
- ◆ 기관이 관리하는 저작물에 대해 이용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 등에 의하여 제공 신청을 한 뒤 제공받은 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누리를 적용하여 홈페이지 등에서 개방하는 경우 이용자는 별도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 따라서 개방을 위해서는 정보공개청구와 달리 공공기관 등이 저작물에 대해 저작권 재산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참고로 공공데이터법에 따른 제공 신청 시에도 기관이 저작권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제공이 가능합니다.

*참조법령 28-29p

14

공공누리를 적용하지 않은 저작물에 대해 공공데이터제공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공공누리 미적용을 근거로 제공 거부 가능한가요?

- ◆ 공공누리는 이용자가 이용 조건에 따라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표시 제도입니다. 공공누리 표시 여부와 상관없이 공공기관은 저작권법 및 공공데이터법 취지에 따라 저작권을 확보한 저작물을 제공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공누리 미적용을 이유로 제공 거부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 한편,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에 대하여 기관은 저작물의 이용에 따라 제3자의 권리가 현저하게 침해되는 경우 등 **공공데이터법 제17조 제1항 각 호 사유**에 해당한다면 이를 근거로 제공 거부할 수 있습니다.

*참조법령 28-29p

참조
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성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 ③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기본원칙) ④ 공공기관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제28조제1항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데이터의 영리적 이용인 경우에도 이를 금지 또는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범위) ①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
2. 「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

15

기관의 공공저작물 중 비상업적으로만 이용 가능한 제2유형과 제4유형에 대해 교재 제작, 책 출판 등을 목적으로 상업적 이용 허락 요청이 들어온 경우 기관에서 상업적 이용의 거부 근거를 어떻게 답변해야 할까요?

- ◆ 저작권법 제24조의2 도입 취지상 공공기관에서 저작재산권 전부를 보유하여 자유 이용이 가능한 공공저작물인 경우, 공공누리 제1유형을 적용하여 개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기관에서 저작재산권 전부를 보유한 경우라면 공공누리 제2유형과 제4유형을 부착하셨다 하더라도 적절한 근거가 없는 한 상업적 이용을 제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 ◆ 다만 삽화, 이미지, 참고문헌의 이용 등 타인의 저작재산권이 포함되어 있는 자료 이거나, 저작재산권이 제한되었지만 공공누리 제2유형, 제4유형 부착에 관한 이용 동의를 받은 경우 공공누리 제2유형과 제4유형을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 ◆ 결과적으로 이러한 경우에 한정하여 공공누리 제2유형, 제4유형 부착을 근거로 상업적 이용을 제한 또는 금지한다는 답변이 가능할 것입니다.

BONUS > 상업적이용신청의 경우 대부분 「공공데이터법」 제3조제4항을 근거로 제공신청이 들어오는데, 이처럼 「공공데이터법」을 통해 상업적 이용 신청이 들어온 경우라면 「공공데이터법」 제17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근거로 하여 제공 거부가 가능할 것입니다.

*참조법령 28-29p

16

기관에서 대국민 서비스를 실시하면서 국내외 보고서, 언론기사 등을 홈페이지에 업로드 하여 홈페이지 방문자들이 이용하게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 대법원은 인터넷 링크 중 원문을 공개한 페이지로 직접 연결되는 심층링크 직접 링크는 저작권법상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2008다 77405) 따라서 원작자의 동의 없이 직접 링크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의 화면에 직접 이용하고자 하는 콘텐츠가 구현되는 프레임 링크 등은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 링크 형태가 아닌 원문 제공은 원칙적으로 원작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공익적 목적으로 공정한 범위 내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허용될 여지가 있고 실무상 분쟁 가능성은 적지만, 원칙적으로 저작물을 홈페이지에서 공개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복제권과 전송권이 필요하기 때문에 원작자(공표 기관 등)의 동의를 얻은 후 서비스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조판례 32p

17

참조 판례



인터넷 링크 중 이른바 ‘심층링크’내지 ‘직접링크’를 하는 행위가 구 저작권법에 정한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8다77405 판결)

- 구 저작권법(2006.12.28.법률 제81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제2조 제14호는 그 법률에서 ‘복제’라 함은 인쇄·사진·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같은 조 제9호의2는 ‘전송’이란 일반 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수신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인터넷에서 이용자들이 접속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로의 이동을 쉽게 해주는 기술을 의미하는 인터넷 링크 가운데 이른바 심층링크(deeplink) 또는 직접링크(directlink)는 웹사이트의 서버에 저장된 저작물의 인터넷 주소(url)와 하이퍼텍스트 태그(tag)정보를 복사하여 이용자가 이를 자신의 블로그 게시물 등에 붙여두고 여기를 클릭함으로써 위 웹사이트 서버에 저장된 저작물을 직접 보거나 들을 수 있게 하는 것으로서,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저작물의 웹 위치 정보 내지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는 구 저작권법 제2조 제14호에 규정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저작물의 전송의뢰를 하는 지시 또는 의뢰의 준비행위로 볼 수 있을지언정 같은 조 제9호의2에 규정된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그러므로 위 심층링크 내지 직접링크를 하는 행위는 구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지 않는다.

우리 기관에서 기념사업을 추진하면서 용역을 통해 기념음악을 제작 중에 있으며, 기념음악은 공공저작물로 개방할 예정입니다. 용역 제안요청서에는 용역 결과물의 저작권이 발주 기관과 수행기관에 공동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정하였는데,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 가능한가요?

- ◆ 음악저작물에 공공누리 제1유형을 적용할 경우 모든 국민이 이를 변경하여 영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적용에 따른 개방을 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 전원의 합의 후 가능합니다. 제안요청서에서 용역 결과물의 저작권이 발주 기관과 수행기관에 공동으로 귀속되어 있음을 정하고 있으므로 공공누리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수행 기관으로부터 공공누리 적용에 대한 동의를 별도로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8

저희 지자체는 브랜드슬로건을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개방하였습니다. 그런데 만일 특정 종교단체에서 자체 행사에 시의 브랜드 슬로건을 변형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 별도로 제한할 수는 없나요? 아무리 비영리 목적이더라도 해당 종교단체가 지자체 산하의 기관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한가요?

- ◆ 우선 국가, 지자체, 공공저작물에 해당하는 경우 특정 종교단체라 하더라도 행사에 공공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용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저작권법 제24조의2 참조).
- ◆ 다만, 이용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이용조건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용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저작권 이용에 대해서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인한 민·형사상 대응이 가능합니다.
- ◆ 그러므로 산하 기관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경우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 제15조**에 의거하여 공공저작물의 제공중단이 가능합니다.

참조 법령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지침]

제15조 (공공저작물의 제공중단)

① 공공기관 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이용조건을 준수하도록 요청하거나 공공저작물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

1. 공공누리에 따른 이용조건을 위반하여 이용하는 경우
2. 공공저작물의 이용이 제3자의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경우
3. 적용중인 공공누리 유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4. 공공저작물 제공 및 이용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5. 공공저작물을 불법행위 등 부정한 목적에 악용하는 경우

19

저희 기관은 매년 백일장과 그림그리기 대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수상작을 엮은 책을 발간한 뒤 기관 홈페이지에도 게시하고 있습니다. 본 수상작품집에 공공누리를 적용하여 개방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 ◆ 공모전에 출품된 응모작의 저작권은 응모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됩니다.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은 단순히 기관이 저작물을 공개하는 것을 넘어서 외부의 제3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을 허락하는 것이므로,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저작권 양도나 이용허락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 수상작에 대해 저작권 양도를 받았다면 공공누리 부착이 가능하며, 저작권 양도가 아닌 이용허락을 받은 경우 공공누리 적용에 대한 허락을 받아 공공누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 이때 공모전을 주최한 기관에서는 다른 사람들보다 우선하여 해당 저작재산권을 양수할 수 있으나, 해당 응모자에게 거래관행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안서 등에 수상작이 아닌 공모전 출품작 전부의 저작권을 귀속하기로 하는 내용은 지나치게 부당하여 무효로 될 가능성이 있음을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부록 [창작물 공모전 가이드라인(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 저)] 184p



20

저희 기관에서는 매년 시화전을 개최하여 최종 선정된 시화 작품의 저작재산권을 양도 받은 후 공공저작물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최근 여러 출판사로부터 시화 작품을 출판하고 싶다는 요청을 받았는데요. 저희 기관에서는 이용자들의 사용 현황을 파악하고, 판매수익 중 일부를 교육단체에 기부하고자 유료로 개방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 ◆ 공공기관은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경우에도 자유이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공공누리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공공누리를 적용하지 않고자 하는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 제11조 제3항)**
- ◆ 그리고 위와 같은 사유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된 저작물 중 운영상의 이유로 이용료 징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신탁하거나, 「공공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을 준용하여 직접 징수 가능합니다.**(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지침 제13조)** 무료 개방보다 유료 개방이 적합하거나, 공공저작물의 지속적인 이용 현황 파악이 필요한 경우 공공저작물 신탁관리제도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 ◆ 공공저작물 신탁관리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유·무료 저작물의 저작권을 위임받아 공공기관을 대신하여 저작권 이용허락 및 민간 유통을 대행하고 저작권 권리처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 현재 공공저작물 저작권 신탁관리기관으로 허가된 한국문화정보원에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저작물의 저작권을 신탁받아 이용 허락과 관련된 제반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 ◆ 신탁관리를 하실 경우 합리적인 저작권 관리 및 사용료 징수가 가능하고, 상시 모니터링 및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공동 법적 대응을 통한 안전한 저작권 관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참조 법령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지침]

제11조(공공누리의 적용)

③ 공공기관은 본래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이용료 징수가 불가피한 경우 공공누리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단, 이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3조(이용료 징수) 공공기관 등은 제11조 제2항 및 제3항의 사유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된 저작물 중 운영상의 이유로 이용료 징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라 신탁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허가한 신탁관리업자의 「공공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을 준용하여 직접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공공저작권의 신탁) 공공기관 등은 다음 각 호의 공공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법 제105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허가받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신탁할 수 있다.

1.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저작물
2.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저작물로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

21

저희 시에서는 자체 브랜드를 상표 등록한 후 별도의 심사와 선정 과정을 거친 농산품업체에 한해서만 상자나 포장지 등에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일 시 자체 브랜드에 공공누리 제3유형을 적용하여 개방하면 일반인 누구나 마음대로 사용이 가능한건가요?

- ◆ 시의 브랜드를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개방하시면 이용자들은 상업적 목적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나, 공공저작물의 내용을 변형 또는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 ◆ 만일 기관에서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개방이 곤란하다고 판단하신다면, 공공저작물 신탁관리제도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참조법령 37p

22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지침」 제13조는 이용료를 징수하려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을 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기관 내부 지침에 따라 공공저작물을 무료로 제공하되 필요 최소한의 실비만 청구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저작권 등록을 해야 하나요?

- ◆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지침 제12조**는 “공공기관 등은 자유이용 대상 공공저작물에 대해서는 무료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저작물의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필요최소한의 실비범위 내에서 이용자로 하여금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공공저작물의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무료로 제공하고, 최소 실비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조법령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지침]

제12조(제공비용) 공공기관 등은 자유이용 대상 공공저작물에 대해서는 무료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저작물의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필요최소한의 실비범위 내에서 이용자로 하여금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23

개방 후 출판 및 판매되고 있는 공공저작물의 권리를 확인해보니
 공공누리 제1유형 적용이 불가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미 이용 중인 출판사에 대해 제작 및 판매의 중단을 요청할 수
 있나요?

- ◆ 공공기관은 공공저작물의 이용이 제3자의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경우나 적용
 중인 공공누리 유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라면, 이용자에게 대하여 이용 중단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지침 제15조).
- ◆ 따라서 사안과 같이 권리 확인 결과 공공누리 제1유형 적용 시 제3자의 권리 침해가
 예상되거나 공공누리 유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라면 이를 이유로 판매 중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참조 법령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지침]

제15조 (공공저작물의 제공중단)

① 공공기관 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이용조건을 준수
 하도록 요청하거나 공공저작물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

1. 공공누리에 따른 이용조건을 위반하여 이용하는 경우
2. 공공저작물의 이용이 제3자의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경우
3. 적용중인 공공누리 유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4. 공공저작물 제공 및 이용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5. 공공저작물을 불법행위 등 부정한 목적에 악용하는 경우

② 공공기관 등의 장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공공저작물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에는 즉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공저작물의 제공이 중단되었음을 공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I. 상담사례



공공저작물 담당자 상담 사례

④ 공공저작물 이용

24

방송사로부터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개방한 영상 저작물에 대한 사용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방송사의 이용은 모두 상업적 이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나요?

그리고 제작 취지를 들어보니 이용을 허락해줘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제4유형 공공저작물을 영리적 목적 이용에 허락해줘도 되나요?

- ◆ 공영방송도 상업광고가 포함되거나 시청료를 받는 경우 영리목적으로 볼 수 있고, 시청료를 받지 않는 경우도 방송 주체가 상법상 회사라면 영리목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는 영리목적의 방송에 해당합니다.
- ◆ 공공누리는 일반 이용자가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표시 제도입니다. 따라서 공공누리 이용조건과 다른 내용의 이용을 원하는 이용자는 저작물을 공표하고 관리하는 기관에 개별적 이용허락을 받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 다만, 공공기관에 저작권이 귀속되어 있지 않을 경우(위탁 제작 후 저작권 양도를 받지 않은 경우 등) 저작권자와 협의 후 이용허락을 해야 할 것입니다.

25

저는 기관에서 언론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기관의 보도자료에 공공누리 제1유형을 적용하여 개방하고 있습니다. 언론사가 공공누리 제1유형 보도자료를 이용할 경우, 상업적 이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나요?

아니면 다른 특별한 이용 범위가 있는 건가요?

- ◆ 공공누리 제1유형은 출처표시만을 이용조건으로 하고 있어 상업적/비상업적 이용 여부를 불문하며,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이 가능한 유형입니다.
- ◆ 언론사의 이용과 관련하여, 해당 언론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되었거나 상법상 회사라면 상업적 이용에 해당합니다. 공공누리 유형에서 표시하는 상업적 이용은 특별한 범위를 의미하지는 않으므로 일반적인 범위 그대로 적용하면 될 것입니다.



26

저희는 농업인들을 위한 기술책자를 발간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이 책자가 공공누리 사이트에는 올라가 있지 않는데 별도의 사용신청 없이 사용이 가능한가요?

만일 이용자가 이 책자를 사용하면서 약간 수정하고, 출처를 저희 기관이 아닌 발행인으로 표시한다면 문제의 소지가 없는 건가요?

- ◆ 공공누리가 부착된 자료는 공공누리 사이트에 올라가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별도의 사용신청 없이 이용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 자체가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이고, 저작권법 제24조의2에서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의 업무상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없이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 그리고 공공누리 제1유형이 부착된 자료는 변형 및 상업적 이용이 가능하므로, 수정 등 변형이 가능합니다.
- ◆ 다만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 이명을 표시하였다든지 또는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라면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138조 제2호에 의거하여 형사상 처벌받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 ◆ 그러나 단순히 저작자 표시가 아닌 발행인 표시에 불과한 경우 형사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경우 상대방에게 주의를 주는 정도만 가능하고,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지침」 제15조에 의거하여 공공저작물의 제공중단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조 법령



[저작권법]

-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지침]

제15조 (공공저작물의 제공중단)

- ① 공공기관 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이용조건을 준수하도록 요청하거나 공공저작물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
 1. 공공누리에 따른 이용조건을 위반하여 이용하는 경우
 2. 공공저작물의 이용이 제3자의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경우
 3. 적용중인 공공누리 유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4. 공공저작물 제공 및 이용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5. 공공저작물을 불법행위 등 부정한 목적에 악용하는 경우
- ② 공공기관 등의 장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공공저작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에는 즉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공저작물의 제공이 중단되었음을 공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27

저희 시청에서 상업적 이용을 금지한 공공저작물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이용자는 상업적 이용의도가 없다고 하면서 블로그에 상업적 이용이 금지된 공공저작물을 게시하고 있는데, 이용자의 블로그에 네이버 애드포스트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공공저작물 이용조건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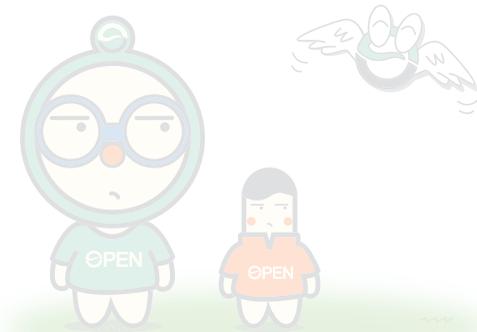
- ◆ 네이버 애드포스트의 경우에는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무료로 배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제공행위가 홍보와 특정 사업체 광고를 위한 것이라면 영리 목적의 상업적 이용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방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5.9. 선고 2012고정4449 판결 참조).
- ◆ 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의 공공저작물을 네이버 애드포스트에 게시하는 경우, 저작물 담당자로부터 별도의 허락을 받고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 따라서 네이버 측에 게시 중단을 요청하거나, 이용자에게 해당 내용을 명확하게 고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조 판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5.9. 선고 2012고정4449판결

- 사건개요 : 도서출판사 대표가 유명 작가인 피해자의 트위터 글 총 56개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전자책 파일을 제작하고 자신 및 타 회사 전자책 어플리케이션에 탑재하여 이용자들이 무료로 다운로드를 제공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작가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도서출판사 대표를 고소하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 도서출판사 대표가 전자책 파일을 무료로 제공했다라도 그 제공행위가 어플리케이션의 홍보와 특정 사업체 광고를 위한 것이라면, 보도·비평·교육·연구 목적 이라기보다는 영리 목적의 상업적 이용에 해당하고, 짧은 해설을 제시한 후 피해자의 트윗글을 꼭 예시하고 있을 뿐이어서 정당한 범위 안에서 일부 인용한 것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도서출판사 대표의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한다.



28

I. 상담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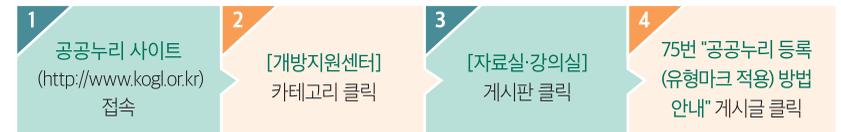
공공저작물 담당자 상담 사례

5 공공누리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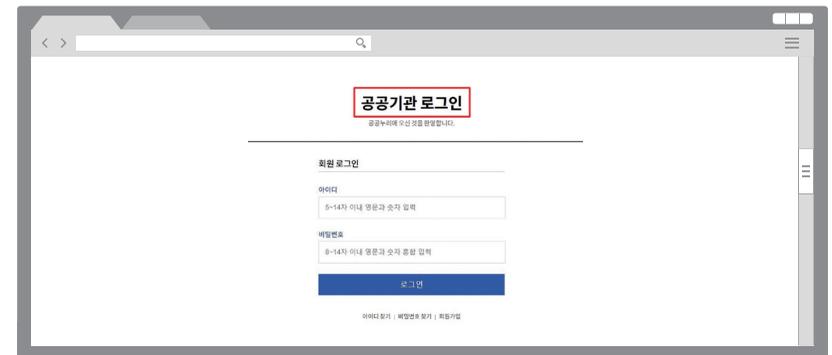
기관에서 저작물에 공공누리 마크를 부착한 후에 공공누리 사이트 연계 신청은 별도로 해야 하는 건가요?

◆ 네. 공공누리 사이트에서 공공누리 스크립트를 다운로드 받아 각 게시물마다 적용하시는 방법으로 공공누리마크를 부착하신 후, 한국문화정보원으로 공공누리 사이트 연계 신청을 별도로 해주셔야 공공누리 포털사이트와 연계가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 공공누리 스크립트 다운로드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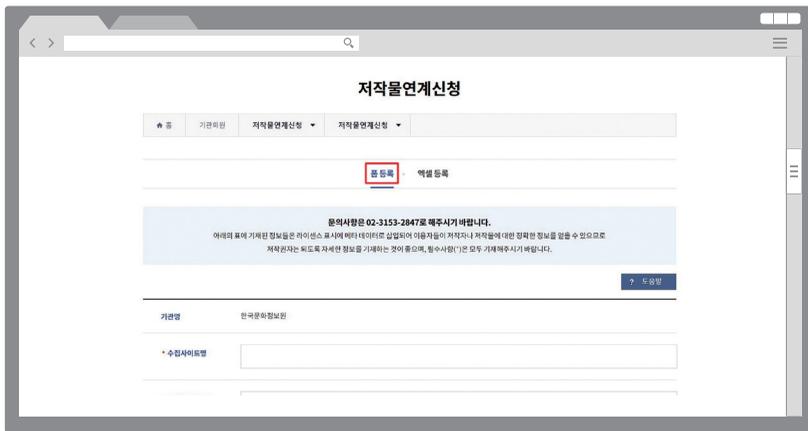


◆ 그리고 저작물 연계 신청을 위해서는 기관회원 회원가입과 로그인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로그인 후 저작물 연계신청 메뉴에서 폼 등록 혹은 엑셀 등록을 통해 연계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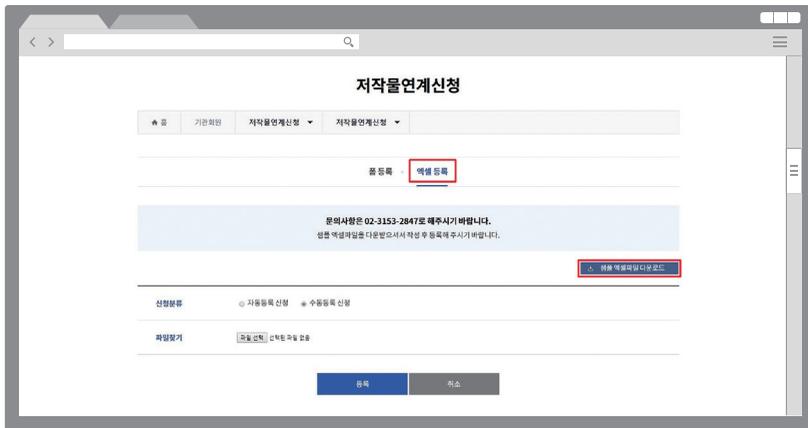
- ◆ 품 등록은 소수의 게시판을 개별적으로 등록할 경우, 엑셀 등록은 다수의 게시판을 일괄적으로 등록할 경우 유용합니다.

<품 등록 연계신청 화면>



<엑셀 등록 연계신청 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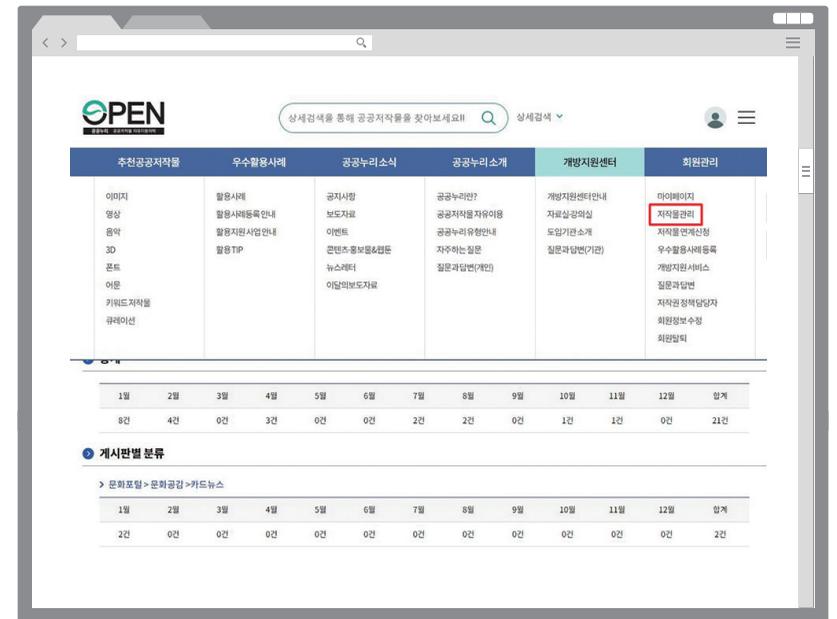
(엑셀 등록으로 저작권연계신청을 하실 경우, 샘플 엑셀 파일을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 ◆ 연계가 완료되면 공공누리 포털사이트에서 공공누리가 적용된 해당 기관의 공공저작물이 검색됩니다.

- ◆ 기관회원으로 로그인한 후 저작물관리>저작물 등록현황 메뉴에서 연계 신청한 게시물의 저작물 등록 여부 및 연계 건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저작물관리 위치 탭 위치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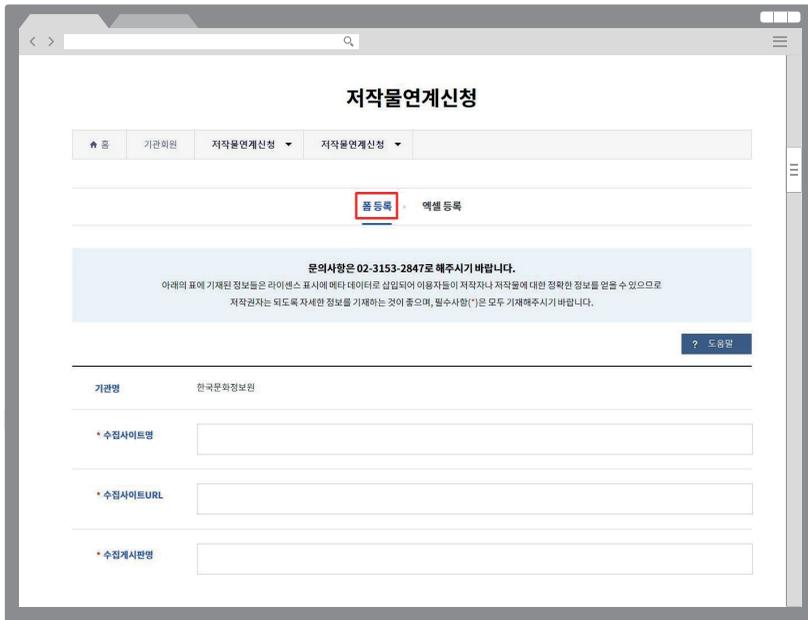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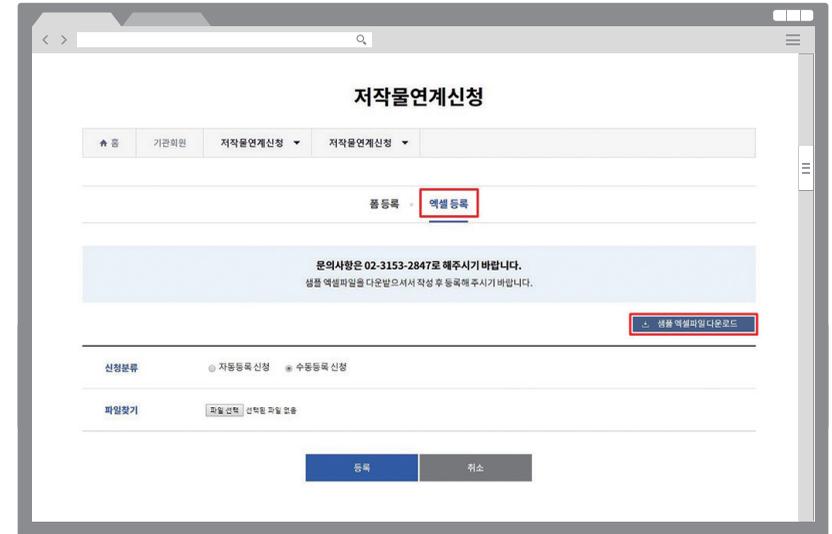
공공누리 연계 신청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 ◆ 공공누리 사이트에서 기관회원으로 로그인 하신 후 저작물연계신청 메뉴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 신청방법은 품 등록과 엑셀 등록 두 가지 방법이 있으며, 엑셀 등록은 다시 자동연계 신청과 수동연계신청 두 가지 방법으로 나뉩니다.

<품 등록 연계신청 화면>



<엑셀 등록 연계신청 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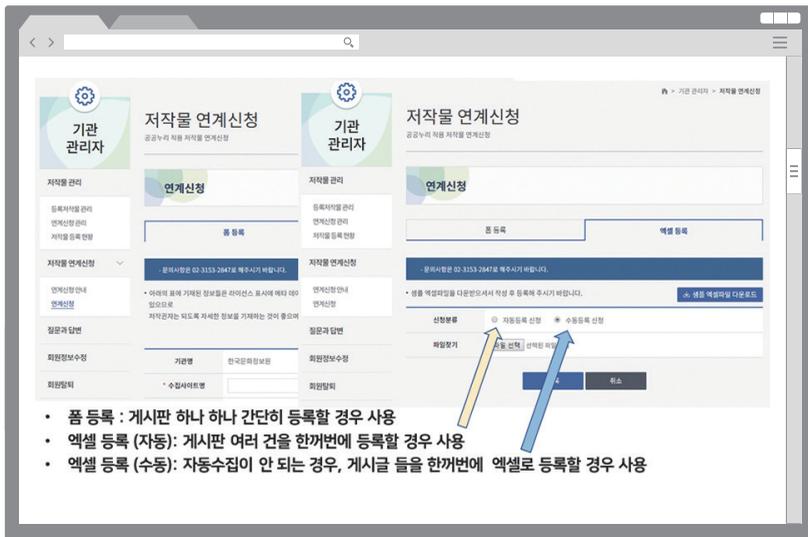


- ◆ 신청 게시판이 10개 미만으로 소량인 경우 품 등록을, 10개 이상으로 대량인 경우 자동연계 엑셀 등록을 권고 드립니다. 또, 게시판 형태가 아닌 홈페이지 콘텐츠 저작물을 등록하시는 경우에는 엑셀 등록 방식으로 신청하셔야 연계가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30

공공누리 연계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요?

- ◆ 공공누리 연계방식은 현재 자동연계와 엑셀 연계 2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게시판 형태인 공공저작물의 경우 자동 수집기 웹크롤러를 통해 저작물이 자동 연계 등록되며, 게시물 추가 시 원칙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자동으로 수집하여 연계 되나, 게시물의 양에 따라 수집주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홈페이지 콘텐츠 형태로 된 공공저작물의 경우는 각 콘텐츠를 개별적으로 연계 신청 메뉴에서 등록하거나 엑셀로 콘텐츠를 개별적으로 작성 후 등록하면 관리자의 승인 조치 후 수동으로 등록되고 있습니다.



- 폼 등록 : 게시판 하나 하나 간단히 등록할 경우 사용
- 엑셀 등록 (자동): 게시판 여러 건을 한꺼번에 등록할 경우 사용
- 엑셀 등록 (수동): 자동수집이 안 되는 경우, 게시글 들을 한꺼번에 엑셀로 등록할 경우 사용

31

공공누리 연계를 위해 게시판 형태의 저작물에 대해서 상세 게시물을 모두 연계신청 해야 하나요?

- ◆ 게시판 형태의 공공저작물은 자동 수집기 웹크롤러를 이용해 수집하기 때문에 개별 상세 저작물의 URL을 일일이 연계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게시판 목록 첫 번째 페이지의 URL을 연계 신청하시면 자동으로 수집과 연계가 진행됩니다.



32

자동연계 중인 게시판에 대해 과거 저작물에 공공누리 마크를 추가 적용 하였습니다. 자동으로 연계 되는 건가요?

- ◆ 자동연계방식은 추가되는 최신의 데이터에 대해서만 자동으로 연계를 진행합니다. 자동연계 진행 이후 과거 저작물에 공공누리 마크를 적용하신 경우에는 개방지원 센터로 연락 주셔서 연계 방안을 협의하셔야 합니다.



33

게시판 형태로 되어 있는 데 첨부문서별로 공공누리 건수 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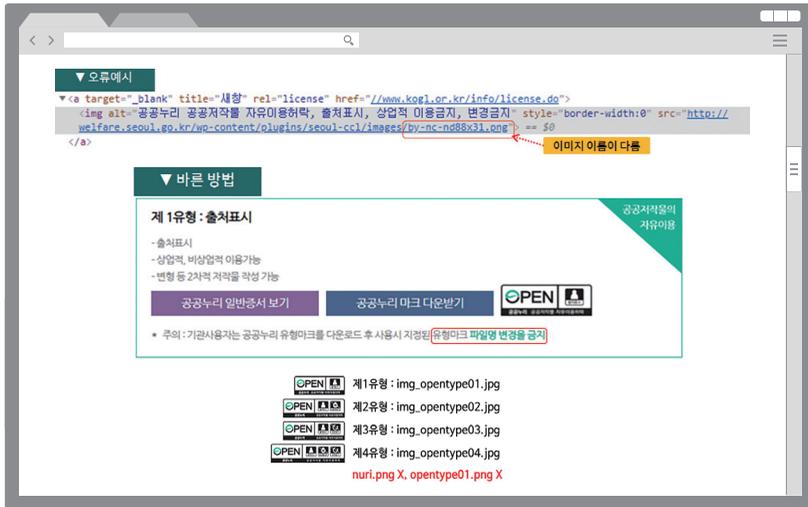
- ◆ 게시판 형태의 온라인 공공저작물은 상세 게시물 별 첨부문서가 여러 건 있다 하더라도 1건으로 인정됩니다.



34

공공누리 연계 시, 유의사항은 무엇이 있나요?

- ◆ 첫째 연계 신청 시, 공공누리 유형마크가 없는 경우 연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연계 신청 전에 먼저 공공누리 유형마크를 부착해야 합니다.
- ◆ 둘째 연계 요청 시, 수집 대상 URL을 반드시 게시판 단위로 분리해서 요청해 주셔야 하며, 공공누리 유형 마크가 있는 게시판인지 확인해 주십시오 만약, 기관의 대표주소 URL로 주시면 일일이 게시판 단위로 확인해야 해서 등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 ◆ 셋째 연계 인정을 받으려는 온라인 저작물에 부착된 마크 이미지명은 유형별로 가이드에서 제공하는 이미지명과 동일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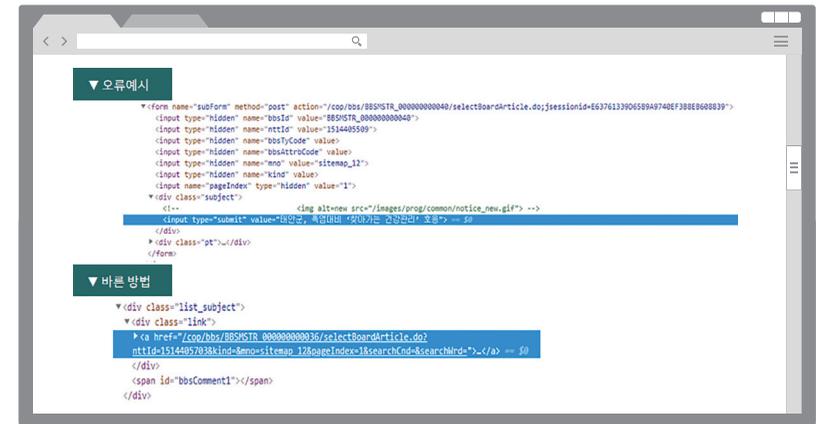


*참고 : <http://www.kogri.or.kr/news/noticeView.do?dataIdx=64>
(한국문화정보원 제공 공공누리 유형마크 부착방법 안내)

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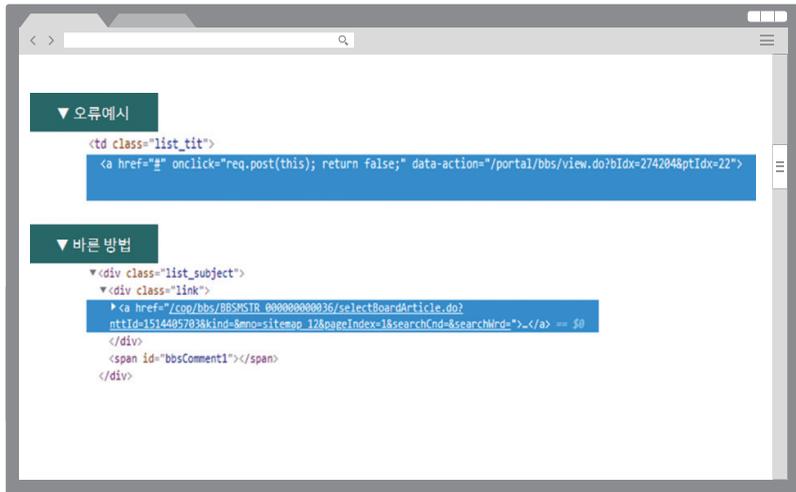
공공누리 수집 연계가 안 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인가요?

- ◆ 이런 경우는 홈페이지 내용을 보여주는 기술적인 방식이 웹수집기가 읽어 들일 수 없는 경우입니다.
- ◆ 대표적인 경우가 사이트 상세페이지 링크가 input 태그로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 ▶ form 방식을 통한 상세 페이지 이동은 수집기가 정상적으로 URL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 ▶ 보안상의 문제가 있다면 각 기관 담당자 분들이 판단하여 보안상 문제가 없는 게시판을 아래와 같이 작업하시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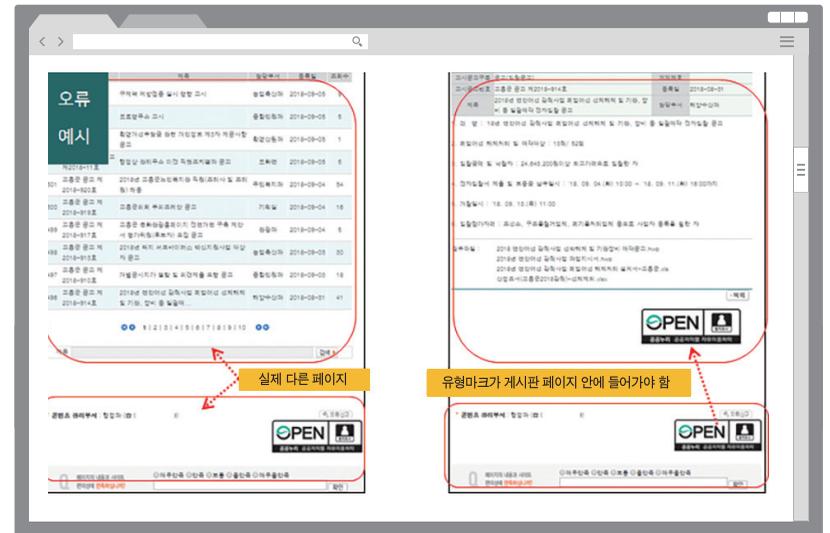
- ▶ 위 이미지와 같이 a태그에 상세 페이지 주소를 입력하면 정상적인 수집이 가능합니다.

- ◆ 또 다른 경우는, 사이트 상세페이지가 스크립트로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 ▶ 수집기가 스크립트 페이지를 인식하는 경우는 여러 가지로 다양합니다. (예를 들면 linkView(page, viewId) 일 경우 해당 상세페이지에 스크립트에서 가져 오는 page, viewId 값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 ▶ onclick, data 태그로 상세 페이지로 이동하는 경우 수집기에서 URL 인식을 못 합니다.



- ▶ 위 이미지와 같이 a태그에 상세 페이지 주소를 입력하면 정상적인 수집이 가능합니다.

- ◆ 마지막으로, 공공누리 마크를 i-frame 밖에 부착하거나 외부 URL인 경우입니다.
 - ▶ 공공누리 마크를 i-frame 밖에 붙여 실제 게시판을 수집하면 공공누리 마크가 없습니다.
 - ▶ 해당 기관이 아닌 타 사이트를 i-frame을 통해 불러오면 수집 불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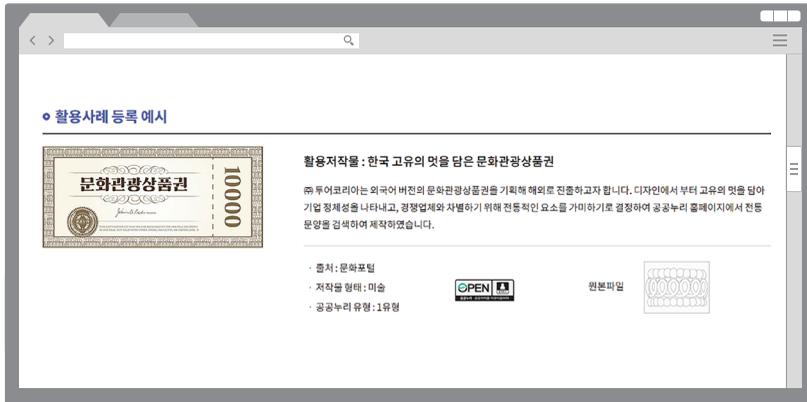


- ◆ 이런 경우에는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정보화를 담당하는 부서에게 요청하여 사이트 운영 및 유지관리 업체의 기술지원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36

공공저작물 우수활용사례로 등록되려면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나요?

- ◆ 연계된 공공저작물이 공공누리 포털의 우수활용사례로 등록되려면 공공기관이 개방한 공공저작물이 적용된 제품(상품)이 제작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 제품의 매출 혹은 사회적, 공익적 기여 등 괄목할만한 성과 역시 필요합니다.
- ◆ 위의 요소에 대한 증빙을 위해 ①활용한 공공저작물(출처 및 내용), ②상용화된 제품 및 상품(이미지 및 설명), ③제품의 소개나 판매가 진행되고 있는 홈페이지 주소 등을 제시해 주시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 활용사례 등록 전 확인 사항으로는 ① 조례 및 규칙, 고시·공고·훈령 등의 비보호 저작물(저작권법 제7조), 저작물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단순 사실 및 정보 등은 제외합니다. ② 초상권이나 저작권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등록합니다. ③ 타 기관이나 기업에서 먼저 등록된 활용 사례가 아닌지 확인합니다.



I. 상담사례

공공저작물 담당자 상담 사례

6 기타

(서체프로그램, 초상권 등)

37

기관 보도 자료에 포함된 사진 중, 식별 가능한 인물 사진이 있는 경우 공공누리 적용이 가능한가요?

가능한 경우 어떤 유형을 적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 ◆ 사진에 나타난 인물이 행사의 주체적 역할을 한 기관의 장이나 임직원, 상부기관 참석자, 세미나 또는 토론회 등에서의 발제자, 강연자, 수상자와 같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라면, 행사에 참여하였을 때 사진이 찍혀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묵시적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공공누리 적용이 가능합니다.
- ◆ 하지만 행사의 단순 참석자나 기관에 속하지 않은 제3자의 경우 별도의 초상 동의를 받아야 공개 및 공공누리 적용이 가능합니다.
- ◆ 공공누리를 적용하여 개방하는 경우에도 변경 및 영리 이용 시, 초상권 침해 가능성이 있으므로, 동의를 받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공누리 제 4유형을 부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향후 공공누리 제1유형등 부착하기 위해서는 초상 이용 동의를 함께 받으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38

저희 기관에서 외주제작업체를 통해 이미지가 들어간 책자를 제작하였고,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을 통해 저작재산권 전부를 양도받았습니다.

그런데 외주 제작업체에서 타인이 창작한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책자를 제작하였고, 이미지 저작권자는 저희 기관에 저작권 침해주장을 하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 기관에서 외주제작업체와 체결한 계약은 일종의 도급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 ◆ 일반적으로 저작물 외주 제작은 도급 계약에 따라 수급인이 독립적 지위에서 자신의 재량에 의하여 저작물을 만들며, 용역 결과물에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한다면 제작한 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 따라서 외주제작업체에서 타인의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저작권 침해가 발생했다면 제작업체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 이와 관련하여 계약서에 '확인 및 보증규정'이 있는 경우, 이는 제작업체가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보증하는 것이므로, 제3자의 권리 침해 사실이 발생하는 경우 용역수행자가 계약 위반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 ◆ 다만, 이 경우 제3자를 상대로 기관이 직접 대응해야 하고, 이와 별도로 용역수행자에게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 및 구상권을 주장하여야 하는 2종의 대응이 필요하므로 '면책규정'도 함께 삽입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참조법령 66p

39

서체프로그램 불법 사용으로 인한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 우선 작성자가 내부 직원인지 외주를 준 용역업체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외부업체가 작성주체인 경우 기관이 불법사용을 지시하거나 묵인하는 등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는 수급인인 용역업체가 불법사용으로 인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 ◆ 만일 내부 직원이 작성 주체인 경우 저작권법 제141조 단서(불법사용 방지를 위한 주의,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한 입증과 함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 ◆ 한편 직원이 불법으로 폰트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였거나, 폰트 프로그램의 이용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합의가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 ◆ 다만, 과도하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을 하시면 저렴하고 간편하게 분쟁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참조 법령

[민법]

제757조(도급인의 책임) 도급인은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그러나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도급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저작권법]

제14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장의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0

기관에서 공모전을 통해 수집한 사진을 이용 중인데 피촬영자인 유명 운동선수가 초상권 침해를 주장합니다. 계속 이용해도 괜찮을까요?

- ◆ 초상권자의 문제 제기가 있음에도 계속적으로 사진을 이용하거나 제공할 경우, 기관이 비록 직접적인 촬영자가 아니어도 침해에 대해 책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적으로 사진을 이용하기 원한다면 초상권자와 권리 이용에 대한 협의를 해야 합니다.
- ◆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모전 개최 시, 응모자에게 초상 이용 허락 등 필요한 이용허락을 미리 받을 것과 이에 대한 확인 및 보증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참고로 초상권이 유명 운동선수라면 초상 사진의 독립적·영리적 이용 시 재산적 가치인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선수 협회 등 선수의 퍼블리시티권을 관리하는 주체에게 문의 후 이용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조 판례

인천지방법원 2016.4.6. 선고 2015가단232254 판결

- 사건개요 : 甲이 乙의 정면 모습(한복 의상의 장♡춤 무용예술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丙 공사의 배포 등의 과정에서 甲과 丙공사는 피촬영자인 乙의 동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 후 丁공사가 丙공사 운영의 홈페이지 갤러리에서 위 사진을 내려받아 약 8년 동안 국제공항 청사 출국장 게이트 벽면 등에 전시한 사안입니다.
- 법원의 판단 : 丙공사는 乙의 동의를 결여된 사진 배포와 공공장소 전시로 인한 피해 등 초상권 침해로 乙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위자할 책임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BONUS · 부록 [초상권 이용 동의서]를 참고하세요! (201p 참조)

41

지자체나 도서관에서 영화를 무료로 상영하는 것이 저작권법 위반은 아닌가요?

◆ 발매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영화의 경우, 지자체나 도서관 등에서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무료로 일반 공중에게 상영이 가능합니다(**저작권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8호**). 다만 시행령에서 무료 상영이 불가능한 경우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예외 사항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 후 저작물을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조 법령



[저작권법]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 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 등에 의한 공연의 예외) 법 제29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을 말한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서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고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형태의 공연
 - 가. 국가·지방자치단체(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의 청사 및 그 부속시설
 - 나.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
 - 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미술관
 - 라.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 마.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른 지방문화원
 - 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
 - 사. 「양성평등기본법」 제47조 및 제50조에 따른 여성인력개발센터 및 여성사박물관
 - 아.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가목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 자.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른 공공시설 중 시·군·구민회관

42

기증받아 설치한 조형물의 위치를 변경하거나 유지 보수를 위해 수선하는 것도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될 수 있나요?

- ◆ 기증받아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도 저작자에게 여전히 동일성유지권이 있으므로, 조형물의 수선, 위치변경 시 동일성유지권 침해를 주의해야 합니다.
- ◆ 옥외에 설치된 조형물은 정기적인 수선을 요하기 때문에 이용의 목적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수선은 가능합니다(**저작권법 제13조 제2항 제5호**). 그러나 수선으로 인해 원작자의 작품 의도를 훼손하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부득이한 범위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 ◆ 한편, 조형물의 위치를 변경하는 것도 원작자의 작품 의도를 훼손할 정도에 이르렀다면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사안에 따라 위치 변경 전에 원작자로부터 양해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향후에는 기증을 받으면서 수선, 위치 변경 등에 대해 미리 동의를 받아놓는 것이 실무상 필요합니다.

참조 법령



[저작권법]

제13조(동일성유지권)

- ①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 ② 저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에 대하여는 이의(異議)할 수 없다. 다만,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학교교육 목적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표현의 변경
 2. 건축물의 증축·개축 그 밖의 변형
 3. 특정한 컴퓨터 외에는 이용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다른 컴퓨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의 변경
 4. 프로그램을 특정한 컴퓨터에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의 변경
 5. 그 밖에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변경

43

미술저작물의 소장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기관행사에 작품을 전시해도 될까요?

- ◆ 미술저작물 원본의 소유자나 그의 동의를 얻은 자는 저작물 원본을 전시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5조 제1항**). 따라서 원본을 전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 참고로 이 경우 전시 기간, 전시 장소, 전시 범위 등에 관하여도 미리 협의해 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조 법령

[저작권법]

제35조(미술저작물등의 전시 또는 복제)

① 미술저작물등의 원본의 소유자나 그의 동의를 얻은 자는 그 저작물을 원본에 의하여 전시할 수 있다. 다만, 가로·공원·건축물의 외벽 그 밖에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향시 전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4

기관 홍보를 위해 유명 작가의 문구를 이용해도 될까요?

- ◆ 문구의 이용은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일 해당 문구가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단어로 조합된 단문이라면 창작성있는 저작물로 보호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이 경우 저작자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고 문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 참고로 영화 '왕의 남자' 대사 '나 여기 있고 너 거기 있어'라는 문구에 대해 법원은 저작물성을 부정한 바 있고(서울고등법원 2006라503결정), 가요 '내가 제일 잘 나가'의 문구를 이용해 '내가 제일 잘 나가사끼 짬뽕'으로 광고한 사안에서 법원은 저작권 침해를 부정한 바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합996 결정).
- ◆ 그러나 짧은 글이라고 할지라도 특별히 창작성 있는 표현이라면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공정한 이용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참조 판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5.9. 선고 2012고정4449판결

- 피해자의 트윗글은 짧은 글귀 속에서 삶의 본질을 꿰뚫는 촌철살인의 표현이나 시대와 현실을 풍자하고 약자들의 아픔을 해학으로 풀어내는 독창적인 표현형식이 포함되는 것이 대부분이고, 각 글귀마다 작가 특유의 함축적이면서도 역설적인 문체가 사용되어 그의 개성을 드러내기에 충분하므로 저작물에 해당한다.





국민
(일반이용자)
상담 사례

- ❶ 공공저작물 일반
(대상, 적용, 이용절차)
- ❷ 공공저작물 이용조건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 변형, 위반)

45

I. 상담사례



저는 공공저작물을 비영리적 목적으로 인터넷 웹사이트 게시 및 애플리케이션 제작 용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로고 CI, 엠블럼, 마스코트도 공공저작물에 해당되는지, 공공누리 표기가 되어있지 않을 시 각 지자체에 허락을 받아야 하는지,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 지자체의 로고, CI 등도 창작성이 인정되는 경우 저작물로 볼 수 있고, 저작권이 지자체에 귀속되어 있다면 공공저작물에 해당합니다.
- ◆ 다만 '자유이용' 대상인지 여부는 개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지자체에 따라 로고, CI 등을 저작권 등록 등을 통해 별도로 관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일단 공공누리가 적용되지 않은 게시물은 해당 기관에 문의 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무단 이용 시, 이용 목적 및 내용에 따라 공정한 범위 내의 이용으로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겠으나,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최종적 판단은 법원이 하는 것이므로 분쟁 예방을 위해서는 각 지자체에 문의 후 이용할 것을 권고 드립니다.

46

대학교 교재를 제작하려고 하는데, 공공기관에서 발표한 통계자료들을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상업적(영리적) 이용에 해당되나요?

- ◆ 통계자료의 경우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이 표현된 창작물로 보기 어려우므로 저작물로 인정되기 어려우나, 창작성이 있다면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 원칙적으로 공공기관에서는 공공누리 표시를 통해 자유이용 대상 저작물임을 안내하고 있으며, 공공누리가 부착된 자료는 공공누리 유형별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하므로 우선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 ◆ 하지만 연구보고서의 연구 성과나 통계수치 등을 수정하여 제3자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는 동일성 유지권 침해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 그리고 저작물이 아닌 단순 통계자료라고 하더라도 이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할 경우 이용자들이 이를 해당 공공기관의 통계자료로 오인하는 등 착오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기관에 문의를 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47

평소 공공저작물을 자주 이용하고 있습니다.

만일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어 있다면,

해당 공공저작물에 포함되어 있는 사진까지 모두 이용 가능 한 것인가요?

- ◆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된 자료의 경우, 자유이용대상 저작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그에 속해 있는 자료 또한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 ◆ 참고로 공공누리 제2유형과 제4유형이 부착된 자료의 경우, 상업적 이용이 금지되고, 공공누리 제3유형과 제4유형이 부착된 자료의 경우 변형이 금지되므로 조건을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면 됩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유형

제 1유형



제 2유형



제 3유형



제 4유형



48

(공공누리과 상표권의 관계)

만약 공공기관에서 상표권 등록을 마친 캐릭터에 공공누리 제1유형 또는 제3유형을 부착해두었다면, 국민들이 이 캐릭터를 이용하여 상업용 제품을 제작해도 되나요?

아니면 상표권 등록이 되어 있으므로 공공누리 부착 여부와 관계없이 상업용 제품을 만들 수 없는 건가요?

- ◆ 공공누리는 저작권법을 근거로 한 자유이용 표시제도이고, 상표권은 상표법을 근거로 하는 권리입니다.
- ◆ 따라서 공공기관 등에서 상표권 등록을 해놓은 캐릭터라 하더라도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어 있다면 유형별 이용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 그러나 공공누리가 부착된 캐릭터라고 하더라도 상표권의 '사용'은 전혀 별개이기 때문에, 상표로서 이용될 수 있는 경우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참조 판례 상표법상 상표를 구성할 수 있는 도형 등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의 요건을 갖춘 경우, 저작권법상의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14.12.11. 선고 2012다76829 판결)



• 저작물과 상표는 배타적·독점적인 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상표법상 상표를 구성할 수 있는 도형 등이라도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저작권법상의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고, 그것이 상품의 출처표시를 위하여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될 수 있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여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여부가 달라진다고 할 수는 없다.

49

저작권법 제7조 제5호에서는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공공기관에서 배포하는 보도자료는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있나요?

- ◆ 저작권법 제7조 제5호에 규정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부고기사, 간단한 사건 사고 기사처럼 단순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보도를 의미합니다. 단순한 사실의 전달이 아닌 기자의 사상이나 감정이 표현된 기사는 창작성이 있으면 저작물이 됩니다.
- ◆ 따라서 이러한 보도자료에 공공누리가 부착되어 있으면 이용조건에 따라 허락 없이 이용하실 수 있지만 공공누리가 부착되어 있지 않으면 해당 공공기관에 문의 후 이용허락을 받고 사용하셔야 합니다.

참조 법령



[저작권법]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50

기관 홈페이지에서 서비스하는 지도도 공공저작물 자유 이용 대상이 되나요?

- ◆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8호는 '지도'를 저작물의 예시로 들고 있으나, 약속된 기호를 사용하여 자연물과 도로 등을 객관적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한 일반적인 지도는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 ◆ 반면 서비스하는 지도 중 특별히 창작성이 있는 것은(예시 : 삽화가 포함된 관광안내 지도 등)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관에서 직접 지도를 제작한 경우라면 공공저작물로 자유이용 대상이 되나, 용역 등 위탁 제작된 경우라면 위탁 제작된 지도에 대해 저작권 양도나 이용허락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자유이용 대상이 되는 공공저작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참조 판례



1) 지도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로서 창작성이 있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1다50586 판결)

-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하여는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므로 그 요건으로서 창작성이 요구되는데, 일반적으로 지도는 지표상의 산맥·하천 등의 자연적 현상과 도로·도시·건물 등의 인문적 현상을 일정한 축적으로 미리 약속한 특정한 기호를 사용하여 객관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지도상에 표현되는 자연적 현상과 인문적 현상은 사실 그 자체로서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지도의 창작성 유무의 판단에 있어서는 지도의 내용이 되는 자연적 현상과 인문적 현상을 종래와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표현하였는지 여부와 그 표현된 내용의 취사선택에 창작성이 있는지 여부가 기준이 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지도의 표현방식에 있어서도 미리 약속된 특정의 기호를 사용하여야 하는 등 상당한 제한이 있어 동일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 한 그 내용 자체는 어느 정도 유사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2) 의도적인 왜곡표현으로 제작된 관광지도에 대하여 기존의 관광지도와 구별되는 저작권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8. 11 선고 2005가단12610 판결)

- 춘천시의 전경을 입체적으로 표현하는 관광지도 제작에 있어서, 의도적인 왜곡표현으로 다운타운 지역을 크게 나타내고, 다운타운 지역으로부터 원거리에 산재되어 있는 관광명소들을 실제보다 가까운 거리에 배치함으로써 관광객으로 하여금 한눈에 관광 명소를 볼 수 있도록 제작한 관광지도에 대하여 기존의 관광지도와 구별되는 저작권이 인정된다.

51

공공누리리는 정부기관에서만 부착할 수 있나요? 개인이 창작한 저작물에 공공누리를 부착할 수는 없나요?

- ◆ 공공누리 제도는 공공저작물에 한정하며, 공공저작물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유한 저작물을 의미합니다.
- ◆ 따라서 개인이 창작한 저작물이라면 CCL을 이용할 수는 있지만 공공누리를 부착할 수는 없습니다.



52

공공기관에서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사진을 사용하여 도서를 출판하려고 합니다. 출처만 정확히 밝히면 별도로 해당 기관에 허락을 구하지 않아도 괜찮은가요?

- ◆ 공공기관에서는 공공누리 표시를 통해 자유이용 대상 저작물임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누리가 부착된 자료는 해당기관으로부터 별도의 허락을 받을 필요 없이 출처를 명시하고, 공공누리 이용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53

문화재를 디자인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문화재 관리 주체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할까요?

- ◆ 원칙적으로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문화재는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 허락 없이 문화재를 디자인에 활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 그러나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문화재라 하더라도 이를 토대로 창작한 사진, 영상, 그림 등 2차적저작물은 별도로 보호되므로, 이와 같이 2차적저작물을 이용하시는 경우라면 이용 허락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또한 특정 문화재의 경우 촬영 및 이용에 일정한 절차를 마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문에 문화재를 그대로 복제한 결과물을 영리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관리 주체를 통해 이용 절차 등을 검토하는 것이 실무상 필요할 수 있습니다.

*참조법령 87p

54

훈민정음 언해본의 내용을 그대로 사진이나 엽서에 삽입하여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시중에 나와 있는 한지라던가 벽지에 새겨져 판매되는 것들을 본적이 있는데 그런 것들 역시 저작권 허락을 받고 만든 상업적 제품이라면 허가를 받기 위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 ◆ 학교 및 박물관 등에서 소장하고 있는 언해본 이미지의 경우 이미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자유롭게 이용 가능합니다. 즉, 저작권에 대한 별도의 이용허락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 ◆ 참고로 디지털화된 고해상도 복제본을 유료 판매하는 경우에는 무단 이용 시 (저작권 침해는 아니지만)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용하고자 하는 이미지를 변형한 2차적저작물을 이용할 경우에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한 저작자의 허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참조
법령**

[저작권법]

제39조(보호기간의 원칙)

① 저작재산권은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55

우리 업체의 수행경력을 소개하기 위해 공공기관 로고 등을 사용하는 것도 허락이 필요한가요?

- ◆ 허락 없이 타 기관의 로고를 이용하는 경우 이용 방법에 따라 상표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위반이 될 수 있으나, 사안과 같이 상업적 이용이 아닌 단순히 수행 경력을 소개하는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특별히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 다만 이용 방법이나 범위에 있어서 허용되는 범위를 초과하거나 관행과 다른 특별한 이용에 해당한다면 해당 기관에 문의 후 이용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I. 상담사례

 A large circular graphic with a teal border. Inside the circle, there is a large, stylized number '2' in the center. Surrounding the '2' are several icons: an open book at the top left, a hand holding a pie chart at the bottom right, and several small circles of varying sizes scattered around. Below the '2', the text '국민(일반이용자) 상담 사례' is written. Below that, a dotted line separates it from the main title '2 공공저작물 이용조건'. Underneath the title, the text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 변형, 위반)' is listed.

국민(일반이용자) 상담 사례

.....

2 공공저작물 이용조건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 변형, 위반)

56

이용자가 공공누리에 올라와 있는 저작물을 이용할 때
출처표시는 공공누리 마크로 표시해야 하는 건가요? 텍스트로 표시하면 되는
건가요?

- ◆ 이용자는 출처표시를 텍스트로 해 주시면 됩니다. 공공누리 마크는 공공저작물의
이용조건 명시를 위하여 제공자(저작권자)가 붙이는 것입니다.



*참조법령 95p

57

전자책 출판사인데요.
공공누리가 적용된 유물 등의 이미지를 이용하여 전자책을 출판하려고 합니다.
출처표시와 관련하여 전자책 마지막에 각 유물이름과 출처를 표시해도 되는지,
아니면 이미지마다 출처를 표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 출처표시 방법에 대해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다만 각 저작물의 출처가 다르다면
각각 표시해야 제3자가 실제 저작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으므로 각각 표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안에 따라 다른 방식의 표시를 원한다면 해당 기관에 문의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조법령 95p

58

저는 공공기관 스크린에 상영될 비상업적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공공누리가 적용된 사진들을 이용하는 경우 출처표시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제작하고 있는 영상의 특성상 출처표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출처 표기 없이 공공누리 사진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 공공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저작권법 제37조** 및 공공누리 이용조건에 따라 해당 공공저작물의 출처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 ◆ 저작권법은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물의 성격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인정되는 경우 어느 정도의 융통성 있는 표시는 가능할 것입니다.
- ◆ 영상에 사용되는 사진저작물의 출처표시는 엔딩 크레딧 등에 표시도 가능합니다.
- ◆ 다만 부득이 출처표시가 제한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출처 생략에 대하여 해당기관에 별도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59

저는 출판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제작에 각 공공누리 제1유형과 제3유형이 부착된 사진 자료를 사용하려고 하는데요.

공공누리 홈페이지에서 권고하는 출처표시방법은 너무 길어 홈페이지 UI 상 기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누리 제1유형/OO박물관”처럼 간략한 형식으로 대체 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 ◆ 문의 주신 출처표시 예시는 '예시'이므로 반드시 그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저작물의 성격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인정되는 경우 어느 정도의 융통성 있는 표시는 가능할 것입니다.
- ◆ 참고로 공공누리 제1유형이라는 출처표시보다는, '출처'를 명시하는 문구가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시 : OO박물관 홈페이지(링크 삽입) 등)
- ◆ 출처는 제3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위치에 표시하여야 하며, 저작물의 특성상 출처표시로 인한 이용의 곤란함이 우려될 경우 저작자 동의 후 표기 방법 또는 위치 등의 조절이 가능합니다.

참조 법령



[저작권법]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4까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공공저작물 저작권 권리 및 이용 지침]

제20조(출처의 명시) 공공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법 제37조 및 공공누리 이용조건에 따라 해당 공공저작물의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출처표시 가이드 예시]

- ① 출판물 : 출판물의 표지 또는 내부에 출처표시
(연구물은 인격권 존중을 위해 연구진의 성명 또한 함께 표시)
 - ② 영상물 : 엔딩 크레딧 또는 자막 등으로 출처 표시
 - ③ 음원 : 디지털파일 또는 파일명에 출처 표시
 - ④ 사진 : 사진 내 적절한 위치에 식별 가능한 출처 표시
(사진 내에 출처표시가 곤란한 경우 사진 하단에 표시)
 - ⑤ 제품 : 제품 디자인을 훼손하지 않는 차원에서 표기(또는 패키지에 표기)
- ※ 출처는 제3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위치에 표시하여야 하며, 저작물의 특성상 출처 표시로 인한 이용의 곤란함이 우려될 경우 저작자 동의 후 표기 방법, 위치 등의 조절이 가능합니다
(예시 : 사진에 직접 출처 표시를 할 경우 상업적 이용의 어려움 발생 등).

60

공공누리 제1유형을 부착한 공공저작물을 출판사에서 그대로 출판하여 유료로 판매하는 것은 문제가 없나요?

- ◆ 원칙적으로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권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공공저작물은 자유 이용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24조의2).
- ◆ 그런데 공공누리 제1유형 또는 제3유형은 상업적 이용을 허용하는 것이므로 이 두 가지 유형을 부착하신 경우에는 출판사가 공공저작물을 유료로 출판하여 판매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 다만 공공기관 등은 국·공유재산으로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된 저작물 이거나 기타 자유이용이 곤란한 사유로 인해 저작권 등록된 저작물 중 운영상의 이유로 이용료 징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한국문화정보원에 신탁을 맡기거나 「공공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을 준용하여 직접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므로, 이용료 징수를 통해 출판사 등으로 하여금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할 수 있습니다.

참조 법령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권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2.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4.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
- ② 국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권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이용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을 수립·시행 할 수 있다.
-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4호의 공공저작물 중 자유로운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61

공공누리 제4유형이 부착된 공공저작물을 일반 학술 도서에 이용할 수 있나요?

- ◆ 공공누리 제4유형이 적용된 저작물은 변경 없이 비영리적으로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위 조건이 충족된다면 이용 가능합니다. 학술 도서라 하더라도 영리적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 또는 저작물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 변경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표 기관에 별도로 문의한 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62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공공누리 제4유형의 △△지도를 도서 출판 시 그림으로 삽입하여 사용해도 되나요?

- ◆ 공공누리 제4유형이 부착된 저작물의 경우, 변형 및 상업적 이용이 금지됩니다.
- ◆ 따라서 출판의 경우 상업적 이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별도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는 한 출판은 불가능합니다.



63

저는 사립대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 홈페이지에 공공누리 제2유형이 적용된 사진의 사용이 가능한가요?

- ◆ 문의주신 '상업적 이용'은 이용 주체를 상업적·비상업적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저작물을 이용하신 산출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했는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 ◆ 따라서 공공누리 제2유형이 부착된 사진자료를 활용하신 후 출판을 하시거나 판매를 하는 등 상업적으로 이용하신다면 상업적 이용에 해당하나, 단순히 연구 목적이나 무료 배포 용도로 사용하시는 것은 비상업적 이용에 해당합니다.



64

저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사홍보용으로 운영하는 SNS 및 블로그에 공공누리 제4유형이 적용된 군청 행사사진을 게시하면 상업적 이용에 해당하여 이용조건에 위반하는 것이 되나요?

- ◆ 판례 중에는 기업이 자사 홍보목적으로 저작물을 무료로 배포한 경우에도 영리 이용이라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3.5.9. 선고 2012고정4449 판결).
- ◆ 따라서 공공누리 제2유형, 제4유형이 부착된 공공저작물을 기업 홈페이지에 무료로 게시하였더라도 기업홍보에 사용되었다면 영리적 이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 따라서 해당기관에 문의 후 이용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조 판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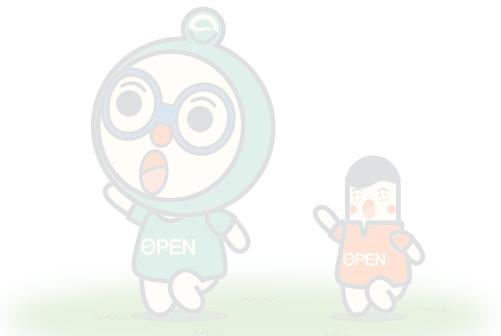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5.9. 선고 2012고정4449판결

- 사건개요 : 도서출판사 대표가 유명 작가인 피해자의 트위터 글 총 56개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전자책 파일을 제작하고 자신 및 타 회사 전자책 어플리케이션에 탑재하여 이용자들이 무료로 다운로드 제공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작가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도서출판사 대표를 고소하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 도서출판사 대표가 전자책 파일을 무료로 제공했다라도 그 제공행위가 어플리케이션의 홍보와 특정 사업체 광고를 위한 것이라면, 보도·비평·교육·연구 목적 이라기보다는 영리 목적의 상업적 이용에 해당하고, 짧은 해설을 제시한 후 피해자의 트윗글을 짝 예시하고 있을 뿐이어서 정당한 범위 안에서 일부 인용한 것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도서출판사 대표의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한다

65

국공립 박물관에서 개방한 공공저작물 이미지를 이용하고 싶습니다.
제가 사용하고자 하는 이미지는 상업적 이용이 금지되는 공공누리 제2유형이 부착되어 있는데, 만일 제가 글을 연재하고 원고료를 받을 경우 위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한가요?

- ◆ 문의주신 바와 같이 글(어문)에 이미지를 사용하여 수익을 얻는다면, 이는 상업적 이용에 해당합니다. 즉, 원고료 취득, 출판 및 발행 등은 상업적 이용으로 해석됩니다.
- ◆ 공공누리 제2유형 또는 제4유형이 부착된 자료는 상업적으로 이용이 불가하므로 만약 상업적으로 이용하고자 하시는 경우라면 저작권자(해당 기관 등)의 동의를 받은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66

공공누리 제1유형의 공공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합니다.
사진의 색상을 약간 보정한 후 제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배포하여도 되나요?

- ◆ 공공누리 제1유형이 적용된 공공저작물은 이용자가 이를 변경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작물의 본질적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저작권격권(동일성유지권) 침해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 예를 들어 예술성이 강한 미술 저작물의 경우 색 보정은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될 수 있으나, 단순 안내 사진은 색 보정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 ◆ 따라서 저작물의 성격을 고려하여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우려된다면 제공 기관에 문의 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조법령 105p

67

공공기관으로부터 4유형이 적용된 교육자료(ppt)를 받아 이를 회사 교육용 자료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교육자료 내용이 방대해서 일부 슬라이드는 삭제하려고 하는데 변형에 해당 하나요?

- ◆ 공공누리 제3유형, 또는 제4유형이 저작물의 변경을 금지하는 취지는 저작물의 변형에 따라 원작자의 권리가 침해 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즉, '변경금지' 조건은 저작물을 발췌 또는 변형 이용하여 원작자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정도의 변경에 이르지 않는 발췌 이용의 경우는 허용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법원은 기본적으로 '저작물의 본질을 해하는 정도의 중대한 내용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를 저작물에 대한 원작자의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16. 선고 2013가합 85566 판결).
- ◆ 한편, 음원의 일부만을 발췌하여 이용한 사안에서는 저작물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순히 오·탈자를 수정하거나 문법에 맞지 않는 부분을 교정하는 정도를 넘어서 저작물의 내용, 형식 등에 추가, 삭제, 절단 등의 변경을 가하는 것은 동일성 유지권을 갖고 있는 저작자만이 할 수 있다고 판시한 사례도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08. 9. 23. 선고 2007나70720 판결).

- ◆ 따라서 PPT 슬라이드를 일부 발췌 이용하는 것이 금지되는 변경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는 있겠으나, 원저작물의 내용을 왜곡하여 원작자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는 정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분쟁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발췌인용으로 인하여 원 저작물의 주요 내용이 왜곡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법령



[저작권법]

제13조(동일성유지권)

- ①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 ② 저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에 대하여는 이의(異議)할 수 없다. 다만,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학교교육 목적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표현의 변경
 2. 건축물의 증축·개축 그 밖의 변형
 3. 특정한 컴퓨터 외에는 이용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다른 컴퓨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의 변경
 4. 프로그램을 특정한 컴퓨터에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의 변경
 5. 그 밖에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변경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지침]

제21조(본질적 내용 등의 변경금지) 공공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공공저작물을 변경할 경우 저작권격을 침해할 수 있는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 또는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68

공공누리 제 4유형이 부착된 사진들을 영상 제작에 사용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용 조건의 '변형 금지'의 설명 중, '2차적 저작물 작성 등 변형하여 이용하는 것은 금지'라는 표현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영상에 사진을 첨부만 하는 것도 금지되나요?

- ◆ 2차적저작물이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입니다. 이처럼 2차적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 원저작물에 기초하여야 하고, 둘째, 실질적인 개변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창작성을 가미하여야 합니다. 즉, 원저작물에 기초하였다더라도 사소한 개변만 있는 경우에는 2차적저작물이라 할 수 없습니다.
- ◆ 따라서 공공누리 제4유형이 부착된 사진들을 단순히 영상에 탑재만 하시고, 내용이나 사진에 대한 개작이 없다면 사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만약 사진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색감 등을 수정을 하시고자 한다면, 이는 변경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저작권자로부터 별도로 허락을 받으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참조법령 107p

69

공공누리 제4유형의 자료를 학습자료 및 홈페이지의 웹콘텐츠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도 2차저작물 작성이 되어 변형에 해당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제공된 저작물을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2차적 저작물 작성 등 변형하여 이용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2차적 저작물이란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말하며,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제공된 저작물을 이와 같이 변형하여 이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하지만 공공저작물을 제공하는 기관에서 내부적으로 판단하여 개별적인 이용허락을 하는 것은 가능하므로, 해당저작물을 제공하는 기관에 개별적으로 이용허락에 관한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법령

[저작권법]

제5조(2차적저작물)

①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 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70

공공누리가 적용된 저작물을 명시된 이용조건과 다른 용도로 활용이 가능할까요?

- ◆ 공공누리가 적용된 저작물은 명시된 이용조건 내에서 사용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용조건 외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라면 해당저작물을 제공하는 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이용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71

공공누리에 명시된 이용조건을 무시하고 사용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 ◆ 이용자가 공공누리에 따른 이용조건을 위반하여 이용하는 경우 공공기관 등의 장은 이용자에게 이용조건을 준수하도록 요청하거나, 공공저작물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등은 이용자의 이용조건 위반으로 저작권에 대한 침해가 발생한 경우 침해의 정지 등 청구, 손해배상의 청구, 명예회복등의 청구,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참조 법령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지침]

제15조 (공공저작물의 제공중단)

① 공공기관 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이용조건을 준수하도록 요청하거나 공공저작물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

1. 공공누리에 따른 이용조건을 위반하여 이용하는 경우
2. 공공저작물의 이용이 제3자의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경우
3. 적용중인 공공누리 유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4. 공공저작물 제공 및 이용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5. 공공저작물을 불법행위 등 부정한 목적에 악용하는 경우

② 공공기관 등의 장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공공저작물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에는 즉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공저작물의 제공이 중단되었음을 공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참고 내용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권리침해죄(저작권법 제136조), 부정발행죄 등(법 제137조), 출처명시위반죄 등(법 제138조)에 의거하여, 형사상 처벌이 가능합니다. 또한 민사상 침해의 정지 등 청구(법 제123조), 손해배상의 청구(법 제125조), 명예회복 등의 청구(법 제127조)가 가능합니다.

72

책의 표지, 영화포스터 등의 이미지를 도서정보 제공이나 영화상영회 개최 등을 위해 인쇄물이나 인터넷 정보제공 시 활용할 경우 저작권자에게 이용허락을 받고 이용하여야 하는지의 여부와 이용가능하다면 사용 이미지 크기가 제한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 ◆ 책의 표지 및 영화 포스터의 경우, 이미지, 어문저작물 등 저작권뿐만 아니라 초상권, 상표권 등 다양한 권리관계가 얽혀 있으므로 권리자의 이용 허락을 받고 이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참고로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 제한 사유를 열거하고 있고(저작권법 제23조부터 제38조 참조), 이에 해당하는 경우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나 보다 안전한 저작물 이용을 위해서는 이용 범위의 확인 및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을 받으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 ◆ 그리고 이용 가능한 경우 법적으로 사용 이미지 크기에 대한 제한 사항은 없으므로, 이용크기 및 이용조건에 관하여도 저작권자와 상의 및 이용 허락을 받아 이용하시면 됩니다.



73

영화나 드라마 등의 클립영상을 교육 자료에 포함시킬 경우 저작권법상 문제가 없나요?

- ◆ 내부 교육용으로 제작하여 사용한 자료의 경우 큰 문제가 없지만 복특정 다수를 위한 배포용 자료라면 종합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 영화 영상 중 3분 정도를 무단 이용한 경우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 사례가 있는 반면, 교육 목적인 경우 **저작권법 제28조**에 따른 공정 관행에 따른 인용으로 인정된 사례도 있기 때문에 이용 사실만으로 침해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 따라서 외부 배포용 자료로서 이용된 영상물의 길이가 짧지 않다면 방송사나 제작사 등 저작권이 귀속된 주체에게 문의 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조 판례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6. 5 선고 2007가합18479 판결

- 방송사의 오락프로그램에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영화의 일부 장면을 약 3분간 인용하여 방송한 사안에서, 그 목적이 시청자들에게 정보와 재미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이용의 성격은 상업적·영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구 저작권법 (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에 정한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참조 법령



[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74

도서관 이용자가 스스로 자료를 복사·스캔한 경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저작권법 제30조**). 따라서 도서관 이용자가 도서관에 설치된 복사기를 이용하여 스스로 저작물을 복사, 스캔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 ◆ 다만 저작권법 제31조 제1항 제1호는 이용자가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복제를 요청하였을 경우,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의 복제물을 1인1부에 한하여 제공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서관 직원의 감독하에 있는 복사기로 이용자가 직접 복사하더라도 제3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복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 한편 도서관에 설치된 복사기가 아닌 개인 기계를 활용한 복제는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복제물을 사적으로만 이용한 것이 아니라 다수에게 배포 또는 온라인으로 전송하였다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참조 법령



[저작권법]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도서관등에서의 복제 등)

①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과 도서·문서·기록 그 밖의 자료(이하 "도서등"이라 한다)를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당해시설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도서관 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도서관등에 보관된 도서등(제1호의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도서관등이 복제·전송받은 도서등을 포함한다)을 사용하여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없다.

1.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공표된 도서등의 일부분의 복제물을 1인 1부에 한하여 제공하는 경우
2. 도서등의 자체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다른 도서관등의 요구에 따라 절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구하기 어려운 도서등의 복제물을 보존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II. 및



○ 만화로 보는
공공누리 제도
『오, 공공누리!』

만화로 이해하는 공공누리 제도

오, 공공누리!



어,
애들아 수업 안 끝났어?
여기 남아서 뭐해?

학보 만들 때 필요한 자료들
찾는 중인데 꽤 오래 걸리네...

나도 공모전에 쓸 사진 찾는 중~
대부분 화질이 별로거나
로고가 박혀있어서
마음에 드는 거 찾기가 힘들어.



**저작권
침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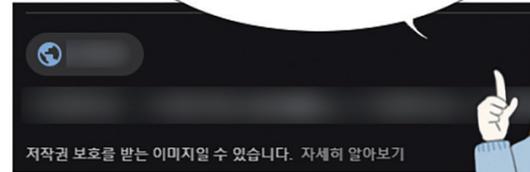
난 예전에
어떤 블로그 사진 갖다 썼다가,
사진주인한테 왜 멋대로 쓰냐고
혼난 이후로는
무서워서 아무거나 못쓰겠어!
혹시 저작권 침해일까 봐.

제 허락도 없이
쓰셨네요?

죄송합니다..



구글 검색을 하면서도,
'저작권 보호를 받는 이미지일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 때문에 약간 짹짹하긴 해...



저작권 보호를 받는 이미지일 수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응? 너희
공공저작물, 공공누리 몰라?
저작권 걱정
전혀 안 해도 되는데.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그게 뭔데!!!?



공공저작물이 뭐냐면,
기관이 저작권을 보유해서
국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이야.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공공저작물 → **공공누리**

국민이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제도

공공누리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걸
알려주는 표시같은 거고.

아~ 좀 더 쉽게!



공공누리 = 자유이용

쉽게 말하면,
공공누리가 적용된 저작물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
이라고 생각하면 돼!



서도 되나?



이거 쓰면 되겠다!



예를 들어볼까?
1단계. 과제에 쓸 자료를 검색하다가
어느 기관의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됐고,
원하는 자료를 발견했다면?

2단계. 그 자료의
공공누리 마크 여부를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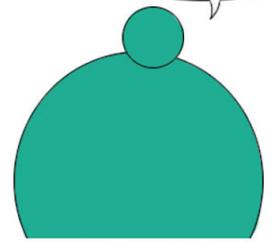
3단계. 공공누리 마크가 있다면
기관에 따로 허락받을 필요 없이
사용하면 되는 거야!



정말!?
그 공공누리 마크만 있으면
허락 안 받고 써도 된다고?



응! 그런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생겨난 공공누리 제도니까.
대신 한 가지만 유의하면 돼.



바로 공공누리 유형이야.
4가지의 유형이 있는데,
유형별 이용조건만 잘 지키면 돼.

'출처표시'는
모든 유형의 기본이라는 걸
기억해줘!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응. 공공누리를 알면
국가나 기관이 만든 품질좋은 저작물들을
저작권 침해 걱정 없이,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거지!

근데, 홈페이지 여기저기 들어가서
하나씩 찾아보긴 힘들 것 같아.
공공저작물만 모아서 볼 수는 없나?

볼 수 있어! '공공누리'는
다양한 공공저작물들을 한 곳에 모아둔
사이트 이름이기도 하거든.
'공공누리' 사이트에 접속해봐!



검색창에
원하는 자료를 검색하면,
해당 공공저작물과
보유 기관이 나올 거야.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상세검색 ^

전체기관

전체기간

-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

오~
기간이랑 기관, 유형까지
세세하게 검색할 수도 있네?
좀 더 쉽게 찾을 수 있겠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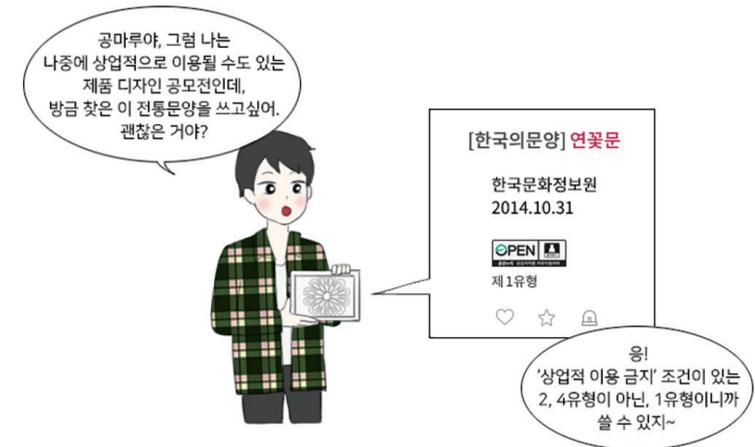
나는 다음호 학보에서
지역축제 소개를 할까 했거든.
'축제'라고 검색해볼까?

내 마음대로 편집하고 싶으니까,
변경금지 조건이 없는
1, 2유형으로 찾아볼래.

축제

1유형 2유형







Ⅲ. 활용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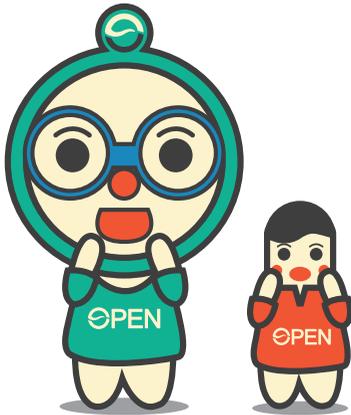
**우수
공공저작물 소개**



01 | 우수 공공저작물 소개

◆ 공공저작물의 정의

공공저작물은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 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유한 저작물을 의미합니다.



◆ 공공저작물의 종류

- ▶ 어문저작물 : 안내책자, 연구보고서, 보고서, 간행물, 보도자료, 평론, 논문, 학습물, 칼럼 등
- ▶ 음악저작물 : 홍보음악, 기관 주제가 등
- ▶ 사진저작물 : 풍경, 인물 등
- ▶ 도형저작물 : (특수한 목적으로 창작성이 가미된)지도, 도표, 설계도(건축 설계도 제외), 약도 등
- ▶ 편집저작물 : 간행물, 사전, 홈페이지, 논문집, 백과사전, 교육교재, 카탈로그, 단어집, 문제집, 설문지, 인명부, 전단, 데이터베이스 등
- ▶ 연극저작물 : 무용, 발레, 무언극, 뮤지컬, 오페라, 마당극, 인형극, 즉흥극, 창극 등
- ▶ 건축저작물 : 건축물, 건축설계도, 건축물 모형 등
- ▶ 미술저작물 : 홍보만화, 기관 로고, 공모전 포스터, 캐리커처, 도안 등
- ▶ 2차적 저작물 :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영상 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



동북아 해운 물류 중심 기지, 「부산항만공사」의 공공저작물

부산 지역 컨테이너 벌크선 부두, 여객선 터미널, 항만 주요 건축물 등을 촬영한 부산항만공사의 사진 공공저작물 759점

위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우수한 생태 자원을 보유한 「강원도청」의 공공저작물

DMZ에 서식하는 천연기념물 황조롱이, 수달 외 다양한 동물들의 사진 공공저작물 170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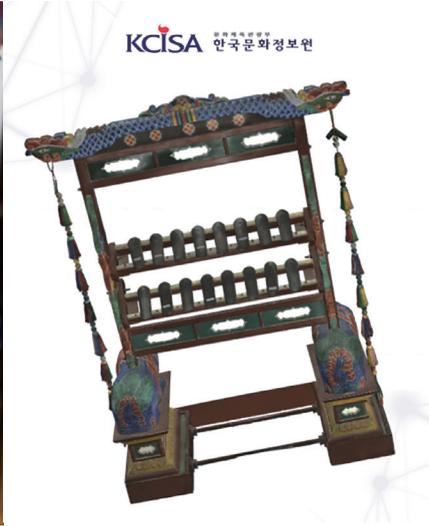
위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역사 전체를 아로새긴 한양도성,
「서울특별시청 문화본부 한양도성도감」의 공공저작물

오백여 년 동안 조선왕조의 도읍으로 궁궐, 관청, 종묘·사직과 도성 백성의 보호막으로 나라의 중심이자 도읍의 상징인 한양도성. 승례문의 낮과 밤을 하나의 영상으로 담은 타임랩스 영상 외에도 우리 문화 유산의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공공저작물 123점

위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고려시대 이후 현재까지 쓰이고 있는 대표적인 당악기, 방향(方響)
 실제로 보기 어려운 악기, 유물, 도검 등의 3D 원본 파일은 물론 전용뷰어를 통해 앞, 뒤, 양 옆까지 한 눈에 볼 수 있는 3D 공공저작물 146점

위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도해의 출렁이는 바닷물결과 '젊은 전남'을 모티브로 역동성 있는 이미지와 높은 사용성을 가진 「푸른전남체」

이외에도 다양한 폰트 프로그램 공공저작물 약 46점

위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Ⅲ. 활용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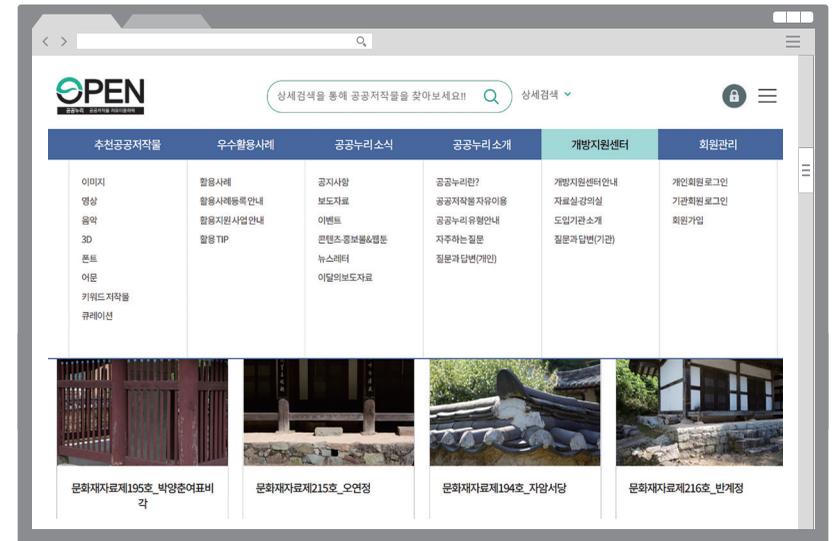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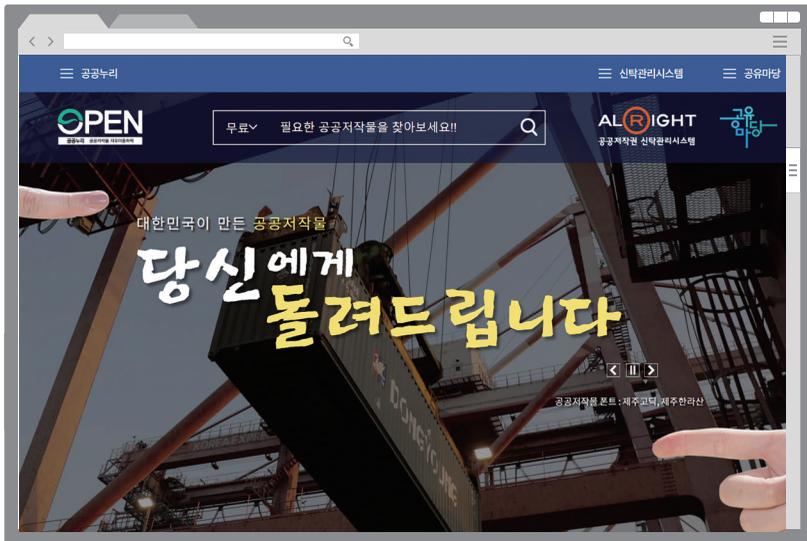


공공저작물
활용 방법



01 | 공공저작물 찾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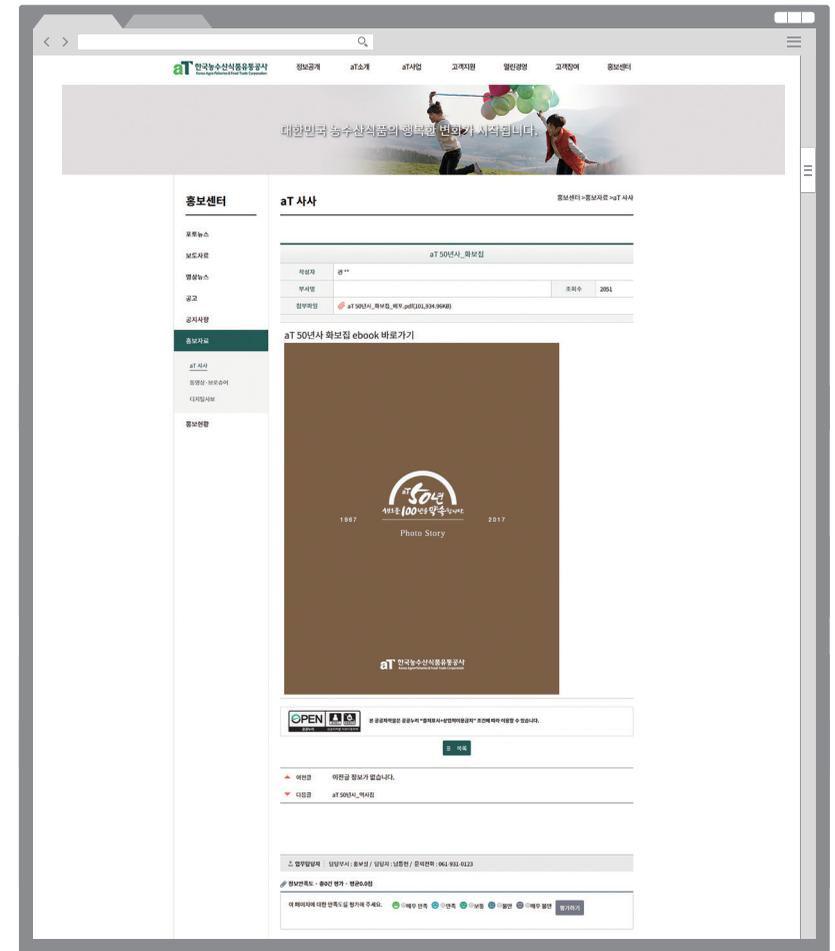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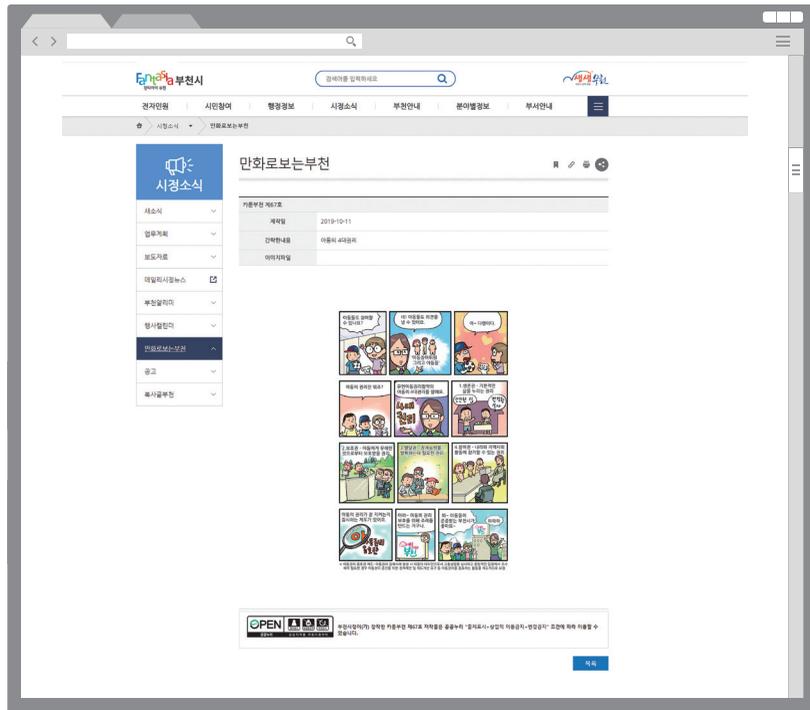
- ① 공공누리(www.kogl.or.kr) : 1,300만건 이상의 공공저작물과 연계되어 있는 사이트
 - > 통합검색창에서 원하는 공공저작물을 찾거나, 추천 공공저작물 카테고리를 통해 고품질의 공공저작물을 추천받으실 수 있습니다.



01 | 공공저작물 찾기

② 각 기관 사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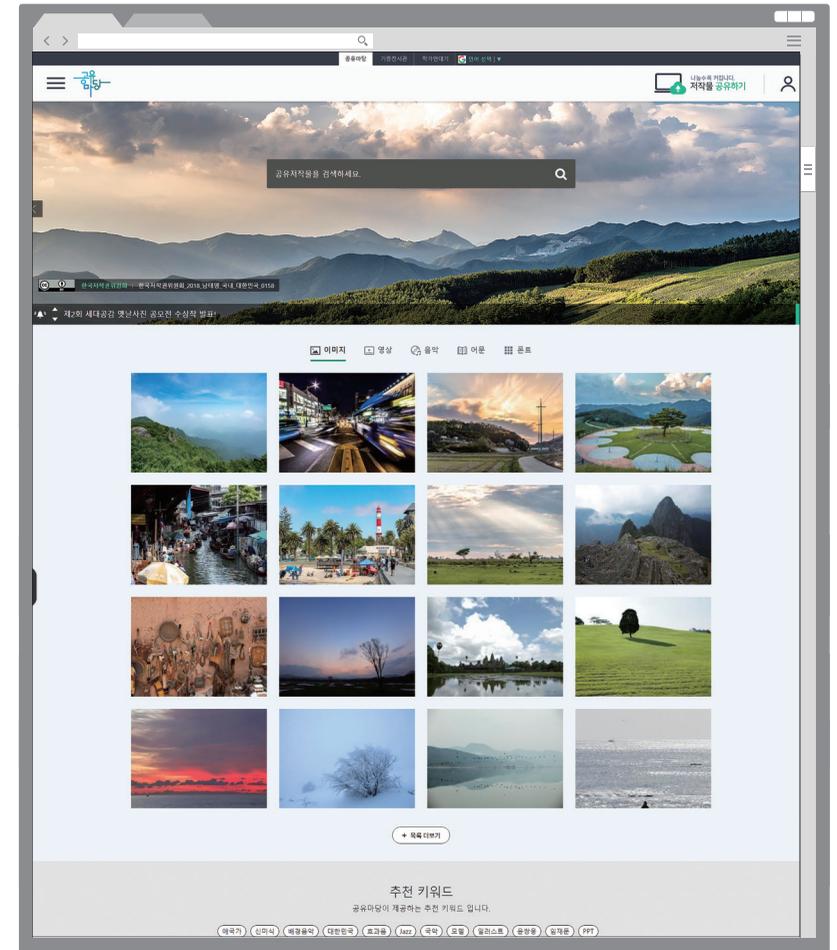
- > 문화체육관광부, 부천시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각 기관의 사이트 내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된 게시물은 유형별 이용조건을 확인 하신 후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01 | 공공저작물 찾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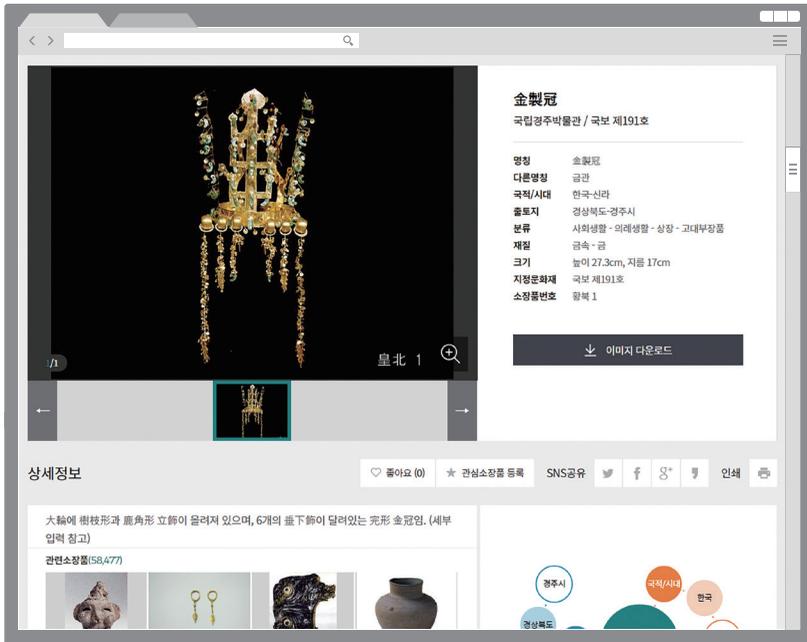
③ 기타 추천 사이트 : 공유마당, e뮤지엄, KISS 등

- > 공유마당(www.gongu.copyright.or.kr) : 공유마당에서는 저작권자가 일정한 조건하에 자신의 저작물을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을 표시한 자유이용허락표시(CCL)저작물,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만료저작물, 저작권자가 국가에 저작권을 기증한 기증저작물 등의 다양한 공유저작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 그림, 사진, 영상, 음악, 어문, 폰트를 포함한 컴퓨터 프로그램 등 약 73만 여 건 ('19. 12월 기준)의 공유저작물이 게시되어 있으며, 해당 저작물에 적용되어 있는 자유이용허락 조건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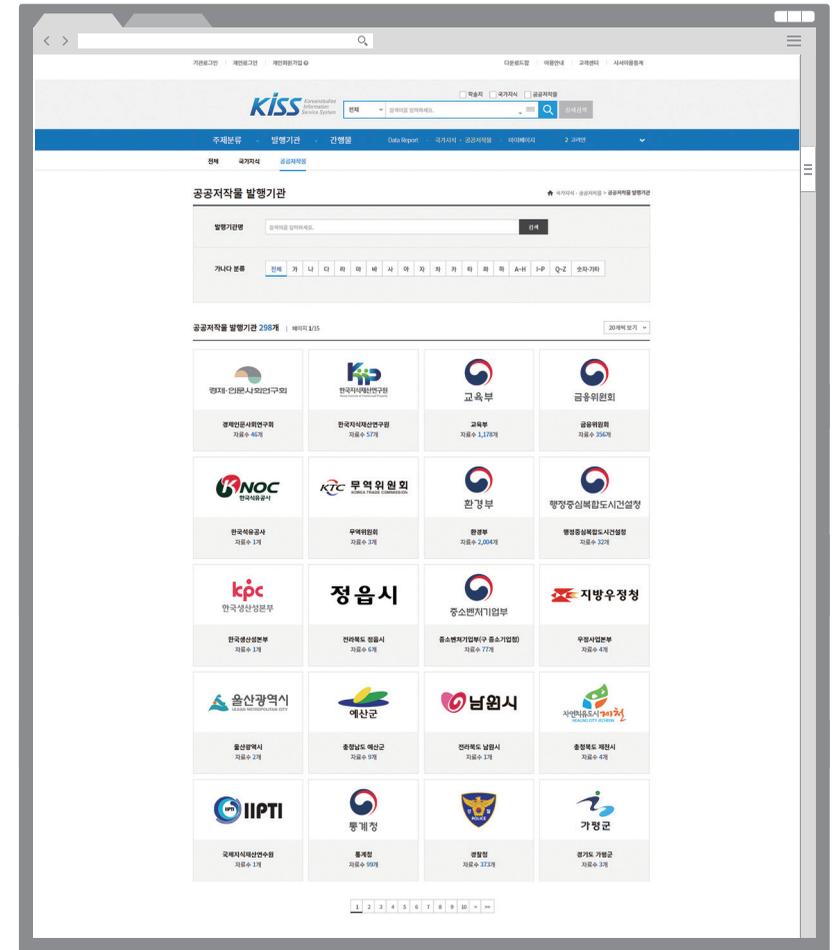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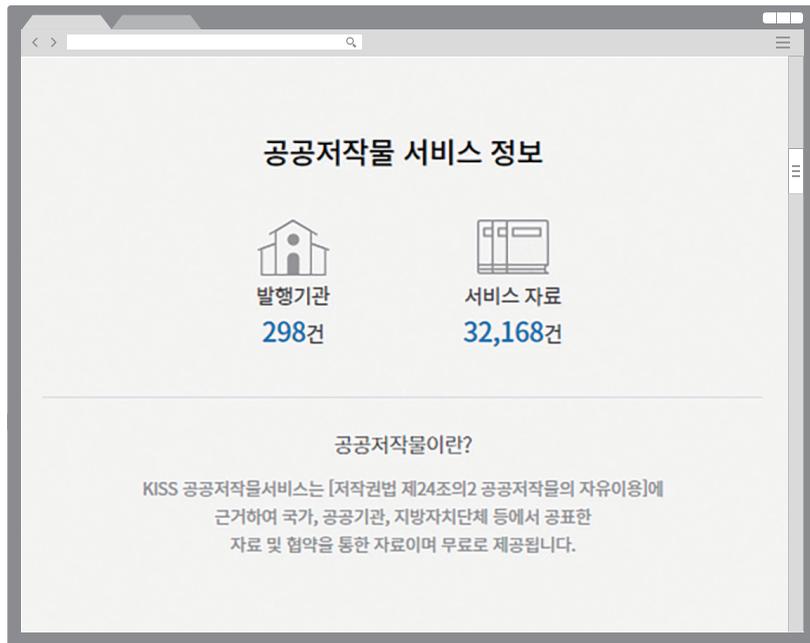
01 | 공공저작물 찾기

> e뮤지엄(www.emuseum.go.kr) : 전국박물관소장품을 검색할 수 있는 “e뮤지엄”에는 국립경주박물관의 신라시대 금제관(金製冠), 대한민국의사박물관의 시티폰 등 255개 기관의 약 175만점 공공저작물이 있습니다. 공공저작물은 국적과 시대, 재질, 소장기관 등 세부적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하나의 소장품에 걸려 있는 수많은 키워드 중 원하는 키워드를 누르면 더 많은 관련 공공저작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1 | 공공저작물 찾기

- > 한국학술정보(KISS, www.kiss.kstudy.com) : 국내 최대 학술자료 사이트인 한국학술정보(KISS)에서는 해당 카테고리에서 298개 기관의 32,168건의 어문 공공저작물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02 | 이용조건에 맞게 활용하기

◆ 상업적 이용 금지의 의미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는 물론, 이에 수반되는 모든 활동에서의 이용을 금지합니다. 공공저작물을 활용하여 제품을 만드는 것과 더불어 기업의 로고, 간판, 홍보물을 만드는 행위 또한 상업적 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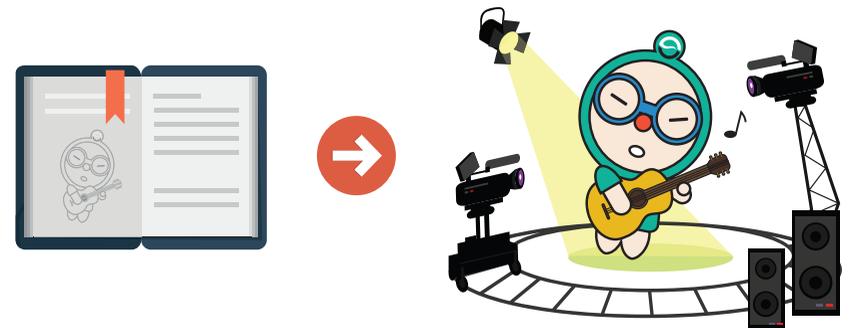
본 내용을 만화로도 만나보세요! (부록) 174p 참고

◆ 변경 금지의 의미

해당 공공저작물을 바탕으로 한 2차적저작물 작성을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2차적저작물이란 원저작물을 바탕으로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말합니다(저작권법 제5조).

다만, 사진저작물의 사이즈를 줄이거나 어문저작물의 일부를 잘라내어 사용하는 것처럼 원저작물을 왜곡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순히 공공저작물의 일부를 사용하는 것은 '변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주의 이용조건을 초과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각 기관 공공저작물 관리책임관 또는 실무 담당자에게 문의 후 사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03 | 출처 표시하기

본 내용을 만화로도 만나보세요! (부록) 178p 참고

I 온라인

사이트 게시판, 블로그 등

추천 01

본 저작물은 000(기관명)에서 20XX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2/3/4]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000(기관명) 홈페이지(웹 주소 또는 출처 링크)에서 무료로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 저작물은 한국문화정보원에서 20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공공저작물 상담 및 활용 사례집(작성:공공저작물부)”으로,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www.kogl.or.kr) 내 자료실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천 02

출처 : 기관명(사이트URL 또는 저작물 출처 링크), 저작물명, 공공누리 제 [1/2/3/4]유형, 발행년도

- 출처 : 한국문화정보원(www.kcisa.kr), “문화정보 이슈리포트”, 공공누리 제1유형, 2019

추천 03

출처 : [기관명](대표 웹 주소)

- 출처 : 한국문화정보원(www.kcisa.kr)

I 오프라인

교재, 전단지 등

추천 01

본 저작물은 000(기관명)에서 20XX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2/3/4]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을 이용하였습니다.

- 본 저작물은 한국문화정보원에서 20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공공저작물 상담 및 활용 사례집(작성:공공저작물부)”을 이용하였습니다.

추천 02

출처 : 기관명, 저작물명, 공공누리 제[1/2/3/4]유형, 발행년도

- 출처 : 한국문화정보원, “문화정보 이슈리포트”, 공공누리 제1유형, 2019

추천 03

출처 : [기관명]

- 출처 : 한국문화정보원

가급적 출처는 자세히 적어주세요!

추천 04

통상의 방법으로 출처 표시가 어려운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쉽게 인식 가능한 곳에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예) 영상 : 엔딩 크레딧이나 영상 설명 페이지 등 눈에 띄는 곳에 출처를 표시하면 됩니다.

예) 그릇 : 제품 자체에 직접적 표시가 어렵기 때문에 제품의 포장지, 홈페이지 상 제품 설명
페이지 등과 같은 곳에 출처를 표시하면 됩니다.

유의사항
01



단, 이용자는 공공기관이 이용자를 후원한다거나 공공기관과
이용자가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제3자가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해서는 안 됩니다.

유의사항
02



온라인에서 출처 웹사이트에 대한 하이퍼링크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에는 링크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주의 출처표시가 곤란한 경우 각 기관 공공저작물 관리책임관 또는 실무담당자에게 문의 후 사용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Ⅲ. 활용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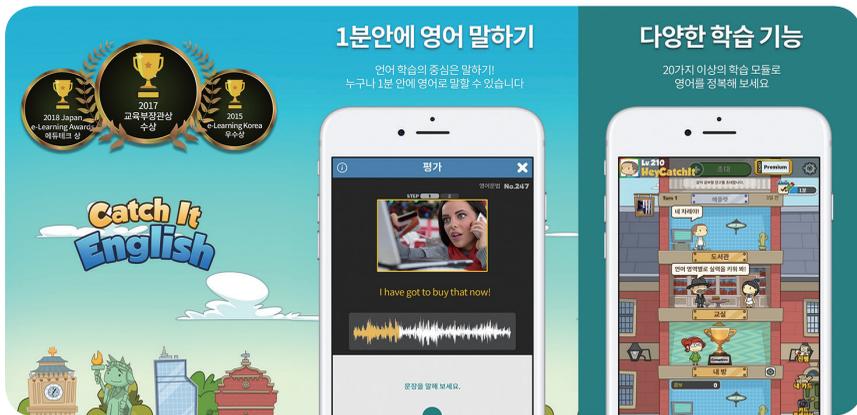


공공저작물
활용 사례



캐치잇플레이

아리랑 TV의 영상 공공저작물을 활용한 언어 학습 애플리케이션, '캐치잇 잉글리시' & '캐치잇 코리안'



아리랑TV 영상에 담긴 콘텐츠를 바탕으로 퀘스트, 배틀, 랭킹 등 모바일 게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시스템을 적용하였으며, '교실', '도서관', '스터디 그룹' 등을 드나들며 친구들과 서로 문제를 주고 받고, 채팅을 하는 등 SNS적인 요소를 가미해 재미와 동기를 부여한 학습용 애플리케이션이다.

- 2015년 '구글플레이 올해의 베스트앱' 선정
- 2017년 '구글에디터스초이스' 선정
- 2018년 일본 서비스 시작 및 'Japan e-learning Awards' EdTech상 수상
- 2019년 9월 구글플레이-중소벤처기업부의 국내 앱게임 개발사 오디션 프로그램 '100인의 선택, 턴업 2019'에서 '톱 3' 선정

썬문화상상연구소

문화유산을 담은 공공저작물 900개를 활용한 역사 여행·체험지 소개 플랫폼, '놀토VR'



주말마다 어디를 가야 하는지 고민인 학부모를 위한 우리나라 역사 여행 및 체험지 소개 플랫폼으로, 자체 개발 알고리즘을 통해 학년별 교과과정에 맞게 역사여행지를 추천 해주며 현장에서 꼭 살펴봐야할 유적과 유물의 정보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동영상, 퀴즈, 사진, 체험 프로그램, 역사 VR 등의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로 제공한다.

- 2014년 '대학 및 청년 창업 500 프로젝트사업' 선정
- 2015년 '대전 청년 CEO 500 프로젝트 우수 기업' 선정

더자개

전통문양 공공저작물인 모란문, 나비문, 수자문, 구름문, 아자문을 활용한 전통공예기업, '더 자개'



전통공예 '자개'를 현대적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디자인과 쓰임을 갖는 상품으로 고안하는 '더 자개'는 기존의 평면적으로 사용된 자개를 곱음질과 절삭 등 전통기법을 응용하되 입체적 디자인과 다양한 색깔, 새로운 쓰임을 갖는 상품을 개발하여 판매중이다.

- 독일 프랑크푸르트 암비엔테(Ambient) 전시회 참가
- 영국 런던 탑드로우(Top Drawer) 전시회 참가
- 일본 도쿄 라이프스타일전 참가
- 미국 라스베이가스 ASD전 참가

젬블로

한국 고유의 아름다움을 살린 전통문양 활용 보드게임, '라온 채우기'



'라온 시리즈'의 후속작인 '라온 채우기'는 한글의 자음과 모음 카드를 사용해 기발한 단어를 만들고 카드를 내려놓는 가족용 보드게임으로, 게임카드와 패키지, 매뉴얼 등에 문화포털에서 제공되는 공공저작물 중 우리나라의 전통 문양을 적극 활용하였다.

[활용 공공저작물]

- '고려시대 금속재 동경 꽃문'
- '기와 처마 끝의 꽃 막새 문양'
- '명주사 극락전 화반의 연등굴문' 등

예담공예

전통문화유산을 활용하여 공예품을 제작하는 사회적 기업, '예담공예'



'예담공예'는 친화적인 전주한지를 소재로 스탠드, 태권도인형, 축구돌이 인형, 마당놀이 인형 등 전통적 이미지의 기념품 및 체험품을 개발·제작하는 사회적 기업이다. 그 중 최근 출시된 카드 지갑은 전통적 이미지의 한복(당의)형태의 디자인으로, 매화문과 봉황문 등의 전통문양 공공저작물을 활용하였다.

- 2019 우즈베키스탄 주최 '코칸드 국제 전통문화 장인박람회' 참가
- 2019 '대한민국 국경일(제4351주년 개천절) 및 국군의 날(71주년) 기념 리셉션' 참가
- 2019 '코리아 럭셔리 트래블 마트(KLTM)' 참가

포팝스

한국관광공사와 국토정보공사의 공공저작물을 활용한 증강현실 콘텐츠 플랫폼, '원더랜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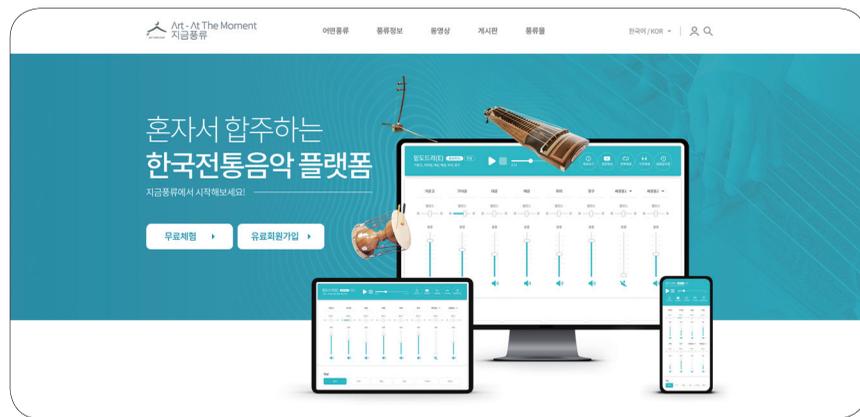


'원더랜드'는 GPS 값을 가진 장소, 지형과 관련된 공공저작물로 구현해낸 증강현실에 사용자의 기록을 남기고, 이러한 기록들이 모여 발자취(트레이스)로 남아 다른 사용자에게 공유되는 서비스이다.

예를 들어 지역의 관광지에 그 장소에 대한 영상이나 이미지 등을 포스팅하면 여행자들이 가이드 없이도 유익한 여행을 즐길 수 있고, 증강현실을 활용한 보물찾기, 땅따먹기 등 사용자들이 야외에서 발로 뛰며 참여할 수 있는 '직접 참여형 콘텐츠'를 제작해 지역을 홍보할 수도 있다.

슈퍼스트링 사운드

언제 어디서나 혼자서 합주 할 수 있는 국악기 음원 공공저작물
활용 플랫폼, '지금풍류'



국립국악원의 공공저작물인 국악기 디지털 음원을 활용한 '지금풍류'에서는 사용자가 직접 연주하면서 거문고, 대금, 해금, 장구, 팽과리 등의 악기를 추가할 수 있고 다양한 악기들의 음량을 제어하며 원하는 합주곡을 만들 수 있다.

최신 버전에서는 전통음악 콘텐츠를 감상하면서 터치 패드를 통해 한국전통음악의 리듬 패턴인 '장단'도 연주해 볼 수 있다.





부록



① 「오, 공공누리!」 번외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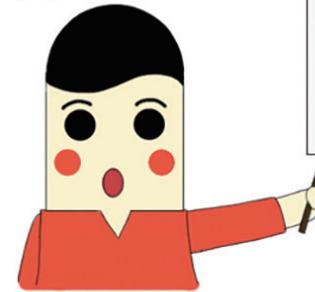
1. 상업적이용금지 설명	
2. 출처표시 설명	
3. 이용허락 설명	

「오, 공공누리」 번외편

01 상업적이용금지 설명



잘 들어봐~



'상업적 이용금지'란, 기본적으로
공공저작물을 활용하여 만든 저작물로
수익을 얻으면 안 된다는 것을 뜻하지만,
단순히 금전적인 부분에 한정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이익을 받지 않아야 한다'
는 의미에 가까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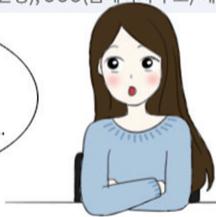


「오, 공공누리」 변외편

02
출처표시 설명

"본 저작물은 'OOO(기관명)'에서 'OO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O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OOO)' 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OOO(기관명), OOO(홈페이지 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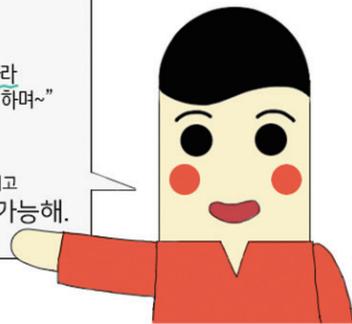
출처표시를
꼭 이렇게 해야만 해?
너무 긴 것 같아.
내 디자인에 어울리지도 않고...



그건 하나의 예시일 뿐,
표시 방법이 특별히
정해져 있는 건 아니야~



출처 표시방법에 대해서는,
저작권법 제37조 제2항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라고 정하고있어.
따라서 출처 명시내용이 명확하다면,
반드시 문장으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간략하게 출처를 표시하는 것도 가능해.



예시로 써본
간략한 출처표시아~
어때?

훨씬 낫다!

1. 출처 - OO박물관
2. 이미지 출처(전통문양-구름문) : 한국문화정보원(문화포털)
3. [기관명], [사이트명(URL)]

정해진 방식은 없는 대신,
누구나 해당 저작물의 출처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해주기만 하면 돼.

이 외에도 다양한 출처표시의 예시를 알려줄게!

- 출판물: 표지 또는 내부 등
- 영상물: 엔딩크레딧 또는 자막 등
- 음원: 디지털파일 또는 파일명 등
- 사진: 사진 내 적절한 위치 또는 사진 하단 등
- 제품: 제품 디자인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패키지, 또는 설명서 등)

출처표시의 방법, 위치 등은
저작자의 동의를 얻으면 조절도 가능하다는 점!

우와~
완전 유용해!

「오, 공공누리!」 변외편

03
이용허락 설명

공누리야,
나는 공공저작물을 이용해온
이용자로서 궁금한 게 있어.

예전에 어떤 기관의
연구보고서를 이용하고 싶었는데,
공공누리 마크가 없어서 관뒀거든.
기관에서 만든 저작물인데,
마크가 부착되지 않는 경우는
왜 그런 거야?

아,
그건 말이지~

모든 기관이 모든 저작물에
공공누리를 적용하는 건 아니야.
아마 자유이용개방이
불가능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걸 거야.

기본적으로 공공누리란
기관이 저작권 전부를 보유했을 때
적용되는 것, 알지? 예외도 있어.



연구보고서라면
외부 연구원이 참여해서
만들어졌을 수 있겠지?

그럼 저작권을 공동소유
제3자가 있을 수 있는 거고,
제3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공공누리를 적용할 수 없기도 해.

계약에 따라
다른 걸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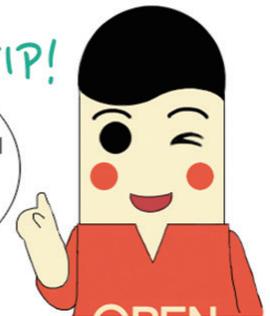
또한
개인의 사생활, 사업상 비밀 등
자유이용이 곤란한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어서
이러한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

그럴 수도 있구나~
그럼 공공누리 마크가 없으면,
아예 포기해야 하나?



공공누리 마크가 없으면
기본적으로 자유이용대상 저작물이
아니라는 뜻이지만,
기관에 따로 이용허락을
문의해보는 게 제일 정확해!

TI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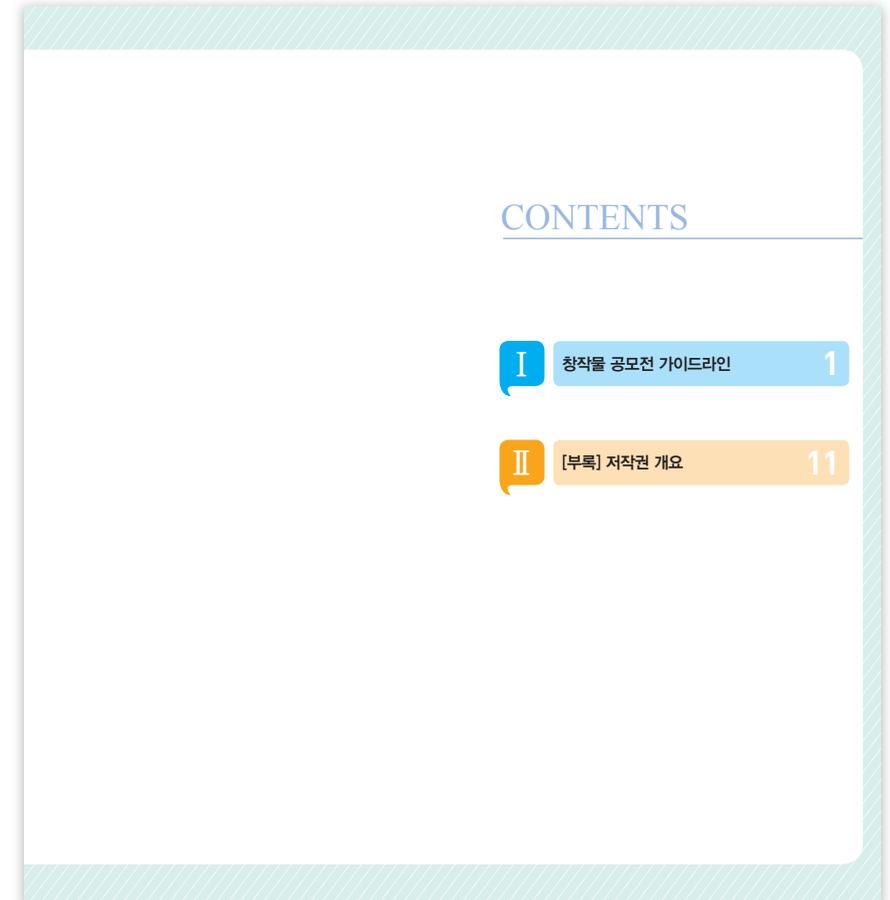


부록



② **창작물 공모전**
가이드라인





출처 : 본 저작물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201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개방한 "창작물 공모전 가이드라인(발간부서:법제연구팀)"으로, 해당 저작물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사이트(www.copyright.or.kr) 내 자료실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창작물 공모전 가이드라인

I. 목적

본 가이드라인은 저작물 관련 공모전(이하 "공모전"이라 한다)에서 저작자로서의 응모자와 이용자로서의 공모전 주최 사이의 권리 관계를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양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공모전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II. 적용 범위

본 가이드라인은 공모전에 출품되는 응모작에 적용되며, 공모전의 주최는 본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되는 내용보다 응모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더 상세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특약으로 정할 수 있다.

- **저작물의 정의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 인간의 사상과 감정이 표현된 창작물

- **저작물의 종류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 소설·시·논문·강연·연설·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 음악저작물
 - 연극 및 무용·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 회화·서예·조각·판화·공예·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
 - 영상저작물
 - 지도·도표·설계도·악보·도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 **저작권의 발생 (저작권법 제10조 제2항)**

· 저작물의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방식(예를 들어, 납본이나 기탁 또는 등록 등)을 요구하지 아니함

III. 근거

- 1 정부는 지식재산 관련 정책이 있어, 지식재산을 효과적이고 안정적으로 보호하고, 그 활용을 촉진하는 동시에 합리적이고 공정한 이용을 도모한다. (지식재산 기본법 제2조 제2호)
- 2 정부는 지식재산을 창출한 개인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환경과 기반을 마련하고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지식재산 기본법 제19조)

IV. 공모전에서의 권리 관계 설정

1. 저작권 귀속 관련

- 1 공모전에 출품된 응모작의 저작권 즉,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인 응모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 (저작권법 제10조)

- **예시**

· 출품된 작품의 저작권(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은 출품자(창작자에게 있다.

- 2 저작권은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을 포함하는 개념이고,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일신전속적인 권리로서 양도할 수 없는 권리이다. 따라서 공모전의 주최가 응모작에 대하여 가질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에 한정되므로, 그 용어를 저작재산권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 (저작권법 제14조 제1항)

※ 저작인격권은 사전에 양도될 수 없으나, 공모전의 주최는 저작권법상 저작인격권의 예외*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한편, 공모전의 주최가 저작물을 창작적으로 변형하여 이용하기 위해서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허락받아야 한다.

* 저작권법 제11조 제2항에서의 공표 동의 추정, 동법 제12조 제2항 단서의 성명표시의 예외, 동법 제13조 제2항에서의 변경에 대한 권리

- **잘못된 예**

· 저작권은 주최 측에 귀속됨
· 저작권 등 일체의 권리는 주최 측에 있다.

- 3 공모전의 주최는 응모작들 중 입상하지 않은 응모작에 대해서는 어떠한 권리도 취득할 수 없으며, 입상한 응모작에 대해서도 저작재산권의 전체나 일부를 양수하는 것으로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고지할 수 없다.

※ 주최는 입상하지 않은 응모작을 공모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모두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 전에 저작자가 저작물의 반환을 요구할 시 저작자에게 반환하되, 반환과 관련하여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응모자에게 부담할 수 있다.

- **잘못된 예**

· 접수된 작품에 대한 저작재산권은 주최 측에 귀속됨
· 수상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출품작의 저작재산권은 주최 측에 귀속됨
· 당선작품에 대한 저작재산권 등 저작재산권은 주최 측이 소유함

- 4 공모전의 주최가 입상작에 대한 저작재산권 전체나 일부를 취득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입상작에 대한 발표 후 해당 응모자와의 별도 합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이 때, 공모전의 주최는 다른 사람들보다 우선하여 해당 저작재산권을 양수할 수 있으나, 해당 응모자에게 거래관행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지급해야만 한다.

- **예시**

· 주최 측은 입상작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합당한 보상을 전제로 우선적으로 양수할 수 있다. 이 때, 양도 여부, 범위 및 그 대가에 대해서는 추후 입상자(저작자)와 별도 합의를 통해 정한다.

· 주최 측은 입상작에 대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합당한 보상을 전제로 저작재산권을 우선적으로 양수할 수 있다. 이 때, 양도 여부, 범위 및 그 대가에 대해서는 추후 입상자(저작자)와 별도 합의를 통해 정한다.

- 5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이 공모전의 주최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에 합당한 충분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I

● 예시

- 저작권산권에 대한 이용허락만으로는 저작물의 완전한 이용을 보장할 수 없는 경우
- 건축저작물의 경우, 그 독자성을 유지하기 위해 타인의 복제를 금지할 필요가 있음
- 해당 응모작에 대한 저작권산권의 이용이 매우 오랜 기간 동안 요구되는 경우
- 캐릭터의 경우, 오랜 기간 사용되고, 변화될 필요성이 있음
- 하나의 저작물에 여러 사람의 저작권이 관련되어 그 행사의 편의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영상저작물의 시나리오 공모전과 같은 경우, 권리 행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저작권산권의 양도가 필요함

2. 저작물 이용 허락 관련

1 공모전에서 입상한 응모작을 이용하기 위해, 공모전 주최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해당 응모작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용허락을 하는 경우, 공모전 주최는 저작권자인 응모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여야 한다.

● 예시

- 입상자(저작자)는 주최 측이 동 건 저작물을 공모전의 취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한 한도 내에서 복제 및 전송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을 허락한다.

2 이용허락을 하는 경우, 저작권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용의 범위·방법은 공모전의 목적에 합당하도록 결정되어야 하며, 기간·장소·횟수 등을 제한할 수 있다.

● 예시

- 건축 공모전에서 주최 측은 입상작의 설계도에 따라 1회에 한하여 건축물을 제작할 수 있다.
- 주최 측은 입상작에 대하여 입상작에 대한 발표일로부터 1년간 복제 및 전송할 수 있다.
- 주최 측은 선정된 작품을 주최 측의 홈페이지와 과월호 잡지에 게재할 수 있다.

3 또한, 이용허락을 결정하는 경우, 저작권자에게 그 이용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보상액은 거래 관행 및 시장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하며, 주최가 공모전에 투자한 비용과 응모자가 공모전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이점들을 참조하여야 한다.

* 공모전의 주최는 이용허락에 대한 대가로서 보상금액을 정하는 경우에는 거래관행 및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금액이 이용허락 범위에 비해 지나치게 적은 경우에는 이용허락의 부분이 무효화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

4 본 가이드라인에서 공모전 주최에게 부여되는 권리 범위를 초과하여 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 범위를 정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따라 별도로 협의해야 한다. 특히,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부여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와 별도로 협의하여야 한다.

● 예시

- 주최 측은 입상작을 복제 및 전송할 수 있다. 또한, 주최 측은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는 경우 별도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5

6

I

5 공모전 주최는 위와 같은 권리의 변동을 결정하여 공고하는 경우, 권리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하기 위하여 저작권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 잘못된 예 → 정정

- 저작권은 주최에게 귀속된다. → 저작권산권
- 판권은 주최에게 있다. → 배타적 발행권 또는 출판권 (다만, 계약의 취지를 고려하여 수정 필요)

3. 분쟁해결

1 공모전의 주최가 권리 변동을 결정하여 고지하고, 이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그 문언의 내용·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우,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해석되어야 한다.

2 공모전의 주최가 본 가이드라인에서 제공한 것보다 응모자에게 더욱 불리하게 권리 귀속과 변동을 정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저작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될 수 있다.

3 공모전에서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응모자나 주최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 해결할 수 있다. 양 당사자는 원만한 분쟁 해결을 위해 상호 노력하여야 한다.

4 주최는 응모자가 공모전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이의할 사항이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절차 및 청구를 제공해야 한다.

● 예시

- 입상작의 저작권 변동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저작자는 다음의 절차와 방법을 통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 그 외의 저작권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저작자는 한 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6 주최는 공모전의 응모자가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저작권 준수 의무를 규정해야 한다.

● 예시

- 응모자는 응모작이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7

8

〈예시〉

000 000 000을 위한
'000 공모전'

■ 기 간 : 0000.00.00 ~ 0000.00.00

■ 응시대상 : 000 000 000

■ 주최/주관 : 00000000/00000000

■ 유의사항/기타 :

○ 응모된 작품에 대한 저작권은 응모자에게 있으며, 000은 수상작에 한하여 ___년 동안 _____할 수 있다.

(* 예 : 1년 동안 복제 · 배포할 수 있다.)

○ 향후, 000은 필요한 경우 응모작에 대한 저작권 재산권 중 일부를 양수하거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저작자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 000은 동 건 저작물을 변형하거나 이용할 경우 응모자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 해결할 수 있으며, 양 당사자는 원활한 분쟁 해결을 위해 상호 노력한다.

○ 000은 수상작 외에 제출된 응모작에 대한 유출 방지 등 주의의무를 다한다.

○ 응모자는 응모작이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000은 임상하지 않은 응모작을 공모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모두 폐기한다. 다만, 응모자가 반환을 요구하면 00일 이내에 반환하며, 반환을 위한 비용은 반환을 요구한 응모자가 부담한다.

II

10

저작권 개요

I. 저작물

❖ 저작물의 정의

·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 저작물의 종류

(※예시규정이며, 저작물의 요건을 갖춘 모든 창작물은 보호됨)

- 소설 · 시 · 논문 · 강연 · 연설 · 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 음악저작물
- 연극 및 무용 · 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 회화 · 서예 · 조각 · 판화 · 공예 · 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 건축물 · 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 사진저작물
- 영상저작물
- 지도 · 도표 · 설계도 · 악보 · 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II. 저작자

❖ 원칙 : 자연인

❖ 예외 : 업무상저작물에 대해서 법인 · 단체 그 밖의 사용자

· 업무상저작물 : 법인 · 단체 등의 기획하에 그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창작물

III. 저작권(인격권&재산권)과 저작인접권

❖ 저작인격권 : 저작물과 관련하여 저작자의 명예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

- 공표권 : 저작자가 저작물을 일반에게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않을 권리
- 성명표시권 : 저작자가 그 저작물에 자신의 이름을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을 권리
- 동일성유지권 : 저작물의 내용 · 형식 및 체호 등이 저작자의 의사와 달리 변경되지 않도록 금지할 수 있는 권리

❖ 저작재산권 :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전해 주기 위한 권리

- 복제권 : 저작물을 인쇄 · 사진촬영 · 복사 · 녹음 · 녹화 등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할 수 있는 권리
- 공연권 : 저작물을 상연이나 연주 · 가창 · 구연 · 낭독 · 상영 · 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 공개하는 권리
- 공중송신권 : 저작물을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할 권리
- 방송권 :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 · 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할 권리
- 전송권 :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 및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이용에 제공할 권리
- 디지털콘텐츠송신권 : 공중송신 중 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공중의 구성원의 요청에 의하여 개시되는 디지털 방식의 음을 송신할 권리(전송 제외)

II

12

- 전작권 : 미술·사진 및 건축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일반 공중이 관람할 수 있도록 전시할 권리
- 배포권 : 저작물의 원작품 혹은 그 복제물을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않고 일반 공중에 영도 혹은 대여할 권리
- 대여권 :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용 음반이나 판매용 컴퓨터 프로그램저작물을 타인에게 대여할 권리
- 2차저작물작성권 :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독창적인 저작물로 제작하고, 이를 이용할 권리

❖ **저작인접권** : 저작물을 공중에 전달하는데 있어서 자본 투자 및 창의적인 기여를 한 자에게 부여하는 권리

- 실연자 :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공연권(생상연에 한함), 방송권, 전송권, 판매용 음반 방송보상청구권, 디지털음성송신보상청구권, 판매용음반 공연보상청구권
- 음반제작자 :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전송권, 판매용음반 방송보상청구권, 디지털음성송신보상청구권, 판매용음반 공연보상청구권
- 방송사업자 : 복제권, 동시중계방송권, 공연권(방송의 시청과 관련하여 입증료를 받는 경우에 한함)

IV. 저작권의 발생 및 보호기간

❖ **권리의 발생**
· 저작권은 저작물의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며, 등록·납본·기탁 등 어떠한 절차나 방식을 요구하지 아니함

❖ 저작권 보호기간

- 원칙 : 저작자 생존기간 및 사망 후 70년
- 무명·이명저작물, 업무상저작물, 영상저작물 : 공표된 때로부터 70년
- 공동저작물 :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의 사망 후 70년

V. 저작재산권의 제한

❖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을 배타적·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이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 또는 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일정한 경우 저작재산권이 제한됨**

- 재판절차, 입법, 행정 자료를 위한 저작물의 복제(제23조)
- 공개적으로 행한 정치적 연설, 법정, 국회, 지방의회에서의 진술등의 이용(제24조)
- 학교 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제25조)
-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제26조)
-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제27조)
-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제28조)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제29조)
-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제30조)
- 도서관등에 보관된 자료의 복제 등(제31조)
- 시험문제로서의 복제(제32조)
-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점자에 의한 복제 등(제33조)
- 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수화 등의 변환(제33조의2)
- 방송사업자의 자체방송을 위한 일시적 녹음·녹화(제34조)
- 미술저작물 등의 일정한 장소에서의 전시 또는 복제(제35조)
- 저작물 이용과정에서의 일시적 복제(제36조의2)
-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제36조의3)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대한 특례(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

- 프로그램 기능의 조사·연구·시험 목적의 복제
- 컴퓨터의 유지·보수를 위한 일시적 복제
- 프로그램코드 역분석
- 정당한 이용자에 의한 보존을 위한 복제 등

VI. 저작물 이용허락

❖ **이용자가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해당 저작재산권자 또는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위임받아 관리하는 신탁 관리단체를 통해 이용허락을 받아 이용 가능함**

※ 저작권신탁단체 현황

영역	단체명	집중관리분야	연락처
음악	한국음악저작권 협회	음악저작권(작곡, 작사)의 권리	02-2660-0400
	한국음반산업협회	음반제작자의 권리	02-3270-5900
어문	한국음악실연자 연합회	음악실연자(가수, 연주자 등)의 권리	02-745-8286
	한국문예학술 저작권협회	어문, 연극, 영상, 미술, 사진 저작자의 권리	02-508-0440
	한국방송작가협회	방송작가의 권리	02-782-1696
한국시나리오 작가협회	영화시나리오작가의 권리	02-2275-0566	
	한국복제전송 저작권협회	어문저작물의 복사권, 전송권의 권리	02-2608-2800

영상	한국영화제작가 협회	영상제작자의 권리	02-2267-9983
	한국영상산업협회	영상제작자의 권리	02-3452-1001
방송	한국방송실연자 협회	방송실연자(탤런트, 성우)의 권리	02-784-7802
뉴스	한국언론진흥재단	뉴스 저작자의 권리	02-2001-7114
공공	한국문화정보센터	공공저작물(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02-3153-2820

❖ **이용자가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저작재산권자를 알지 못하거나 그의 거소를 찾을 수 없어 이용허락을 받지 못할 경우 법정허락을 통해 이용 가능함**

※ **저작권 법정허락**

저작권 법정허락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심의조정팀 ☎02-2660-0102 에 문의

VII. 침해구제

❖ **원칙** : 저작권 침해를 당한 자는 민사 및 형사상 구제 가능
· 민사 구제 : 침해예방, 침해정지, 부당이득반환, 손해 배상 등 청구
· 형사 구제 :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음 (친고죄)

* **저작권적권을 침해하여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본 양식은 공공누리 사이트(www.kogl.or.kr) 내 [자료실/강의실] 게시판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작물 저작권 양도 계약서 표준(안)

※ 저작권 양도 취지

- 저작권법 제24조의 2(공공저작물 자유이용)가 2014. 07. 01.부터 시행되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2013. 10. 31.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공기관이 저작권권을 전부 확보한 공공저작물은 국민들이 자유롭게 변형하여 영리적으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정책적인 취지에 따라 ○○(기관명)은 □□(사업명)의 결과로 창작된 산출물을 □□(사업명) 수행자로부터 저작권권의 전부를 양도받아 국민의 공공정보 활용을 용이하게 하고 창조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 다만, 저작자가 저작권권을 ○○(기관명)에게 양도하더라도 동일성유지권, 공표권, 성명표시권 등 저작인격권은 양도되지 않습니다.

○○(기관명)와 △△(용역수행자)(이하 '양도자'라 한다)는 양자가 체결한 □□(사업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저작권 양도계약을 체결한다.

□ 저작물 표시

- 저작물명 :
- 대상 저작물 상세정보 :

□ 양수자

- 기관명 :
- 주소 :

□ 양도자

가. 사업 책임자(대표자)

- 기관(개인)명 : (인)
- 소속 :
- 대표주소 및 연락처 :

나. 연구 참여 인력

번호	이름 (한자)	소속	주소	대상저작물 상세정보	동의 확인
1					
2					
3					
4					
5					

※ "대상저작물 상세정보"에는 실제 집필에 참여한 부분을 구체적(분야, 페이지 등)으로 표시

□ 계약 약삭사항

- 사업책임자(공동수급체일 경우 그 대표자)는 그 소속 참여인력에게 이 계약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기관명)는 사업책임자(공동수급체일 경우 그 대표자)와 그 소속 참여인력이 이 계약과 관련한 모든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저작권의 양도 내용

제1조(공통) ① '양도자'는 본 계약 체결 후 '양도자'가 제작한 저작물 (보고서, 사진, 영상물, 음향, 일러스트, 도감, 공모전 입상작 등)에 대한 저작권권 일체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등) 및 2차 저작물 작성권을 ○○○(기관명)에게 양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양도자'는 본 계약상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제2조(확인 및 보증) '양도자'가 본 □□□(사업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3자의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권을 양도받거나 이용허락을 받음으로써 ○○○(기관명)가 해당 산출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법적 또는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제3자와 저작권에 대하여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양도자'가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진다.

제3조(저작권권의 이전등록) '양도자'는 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권의 이전 등록을 할 수 있으며, ○○○(기관명)의 요청이 있는 경우 '양도자'는 등록에 필요한 서류 등을 지체 없이 제공하는 등 일체의 협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영상저작물 특례) 본 □□□(사업명)의 결과로 창작된 저작물이 영상저작물인 경우 특약이 없는 경우 저작권법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 등에 따른 영상저작물 특례를 준용한다.

제5조(초상권) 본 □□□(사업명)의 결과로 창작된 사진 또는 영상저작물 등에 특정 인물의 초상이 포함된 경우(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하지 아니한 자가 출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양도자'는 그 촬영에 관한 동의(해당 저작물의 제3자 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득하여야 하며, 해당 저작물의 이용에 관하여 민·형사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양도자'가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진다.

제6조(저작인격권 유보) ○○○(기관명) 및 저작권법 제24조 2에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제3자가 해당 □□□(사업명)의 저작물을 활용함에 있어서 그 행위의 성질 및 정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가 아닌 한 '양도자'는 저작인격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그 권리가 유보(제한)된다.

제7조(저작인접권) '양도자'는 본 □□□(사업명)의 결과로 창작된 저작물에 실연자가 있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른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의 양도에 대하여 저작인접권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며, '양도자'가 방송사업자의 실연자 및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실연자,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실연자에 대하여 보상해야 할 경우 그 권리를 ○○○(기관명)에 양도한다.

제8조(저작자의 권리변동사항) '양도자'는 본 계약 이전에 위 저작물에 대하여 제3자에게 질권을 설정하였거나 저작재산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이용허락한 사실이 있어서는 아니되며,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양도자'는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9조(분쟁해결 및 관할법원) 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나 이견이 발생할 경우 '양도자'와 ○○○(기관명)는 제소에 앞서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도록 한다.
조정에 이견이 있어, 소송이 제기될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0조(계약의 해제) ① '양도자' 또는 ○○○(기관명)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자신 또는 상대방에 대하여 주요채산에 대한 보전처분결정 및 강제집행,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절차, 회사정리, 기타 본 계약을 수행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2.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계약 또는 본 계약에 따라 별도로 체결한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서면으로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후 상당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 또는 시정을 요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저작물의 내용에 심각한 하자가 있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저작권을 양수하는 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② 계약의 해제에 대한 통보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본 계약의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020. . .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동의서

□ 저작자 표시

- 기관(개인)명 :
- 생년월일 :
- 주소 :

□ 저작물 표시

- 저작물명 :
- 상세정보 :

□ 저작재산권 이용허락 동의

본 기관(개인)명은 저작물명의 민간제공을 통해 이용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당 기관명의 저작재산권 (□ 복제권, □ 공연권, □ 공중송신권, □ 전시권, □ 배포권, □ 대여권, □ 2차적저작물작성권) 이용허락에 동의한다.

□ 공공누리 적용 동의

본 기관(개인)명은 저작물명 이용허락에 동의함으로써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활성화를 위한 공공누리(□ 제1유형, □ 제2유형, □ 제3유형, □ 제4유형)를 적용하여 제공하는데 동의한다.

□ 동일성유지권 행사 제한에 관한 동의

본 기관(개인)명은 저작물명에 대한 공공누리 '변경가능' 조건에 따라, 연구결과 또는 명예의 심각한 훼손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용자가 저작물의 본질적인 부분을 변경하여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일성유지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는 것에 동의한다.

※ 변경 이용이 가능한 공공누리 제1, 2유형 적용에 동의한 경우에 해당

[개인정보 제공 동의 및 활용 동의]

1.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소속, 주소 등의 기본 정보
2.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목적 : 저작재산권 이용허락 등 의사표시 확인
3.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작성시부터 사용 목적이 종료되는 때까지 보유

____년 ____월 ____일
 저작자 : (인)
 활용기관 : (인)

초상 이용 동의서

본인은 ○○○(기관명)을 비롯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에서 공익적 목적으로 운영하는 웹사이트 및 기타 간행물 등에 본인의 초상이 도화, 사진, 영상 등의 매체를 통해 복제, 배포, 공중송신, 방송 기타의 방법으로 공개되거나 사용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

(성명) (인)
 (연락처)
 (주소)

[개인정보 제공 동의 및 활용 동의]

1.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소속, 주소 등의 기본 정보
2.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목적 : 초상 공개·사용 등 의사표시 확인
3.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작성 시부터 사용 목적이 종료되는 때까지 보유

_____ 귀중

공공저작물 상담 및 활용 사례집

2019년 12월 16일 인쇄

2020년 3월 6일 초판 발행

발행처 한국문화정보원 공공저작물 개방지원센터
서울마포구 월드컵북로 400 3/6/8층
Tel : 1670-0052

디자인 · 인쇄 (주)태그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총장로 2, 센트럴빌딩 404-1
Tel : 02-2271-0103

- 본 사례집은 공공누리 홈페이지(<http://www.kogil.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 공공누리 홈페이지 ⇒ 개방지원센터 ⇒ 자료실

- 본 사례집에 수록된 내용에 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1670-0052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